
2018년도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옴부즈만 운영성과 보고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옴부즈만

Contents

제1부 총 평	3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옴부즈만 인사말	5
2. 2018년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옴부즈만 운영 평가	6
3. 2019년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옴부즈만 운영 방향	8
제2부 옴부즈만 제도 소개	9
1. 옴부즈만 개념	11
2. 옴부즈만 제도의 필요성	11
3. 옴부즈만 기능과 특징 및 효용성	13
제3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개요	15
1. 도입배경과 추진경과	17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옴부즈만 소개	18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옴부즈만 운영 일반	19
4. 고충민원 처리절차	20
제4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옴부즈만 운영성과	23
1. 고충민원 처리 현황	25
2. 옴부즈만 직접조사 결정 민원 처리현황	29
3. 기타 민원처리 현황(이첩 · 각하 · 철회)	32

Contents

제5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ombudsman 고충민원 주요 처리사례	41
1. 지구단위계획(수봉지구)에 따른 재산권 침해 검토요청 민원	43
2. 학익동 성당 도로점용료 부과 관련 민원	47
3. 주안 고운누리아파트 인접 신축공사 피해보상 민원	52
4. 주안동 담장균열 원상복구 요구 민원	55
5. ㈜DCRE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관련 민원	58
6. 관교동 공영주차장 신축공사 피해방지 조치 요구	60
7. 공원시설 내 불법 설치된 컨테이너 박스 철거 요구	65
8. 의무보험 미 가입 차량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민원	69
9. 골목도로 포장 요구 거부처분 불복 민원	73
10. 주안1구역 재개발 민원 법적 쟁점 검토 요청	76
11. 영업장 무단확장 시정명령 사전통지에 대한 불복민원	78
제6부 부 록	81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ombudsman 활동 현황	83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ombudsman 홍보 사항	89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ombudsman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94

2018년도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옴부즈만
운영성과 보고서

제 1 부

총 평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옴부즈만 인사말 5
2. 2018년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옴부즈만 운영 평가 6
3. 2019년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옴부즈만 운영 방향 8

제1부 총 평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옴부즈만 인사말

2016년에 인천광역시 지자체 중 최초로 출범하여 선도적 역할을 담당했던 미추홀구 옴부즈만은 2018년도에 출범3년차 활동을 수행하였습니다.

2017년도에 이루어진 성과를 토대로 2018년도는 옴부즈만 제도의 본격적인 활성화를 목표로 설정하였지만 전국 지방선거로 인해 선거기간동안 홍보가 제약되어 제도에 대한 구민인식의 저변 확산이 목표한 만큼 이루어지지 않아 아쉬움이 남습니다.

또한 3인의 옴부즈만이 1주일에 1일 5시간씩 근무하는 현재의 비상근 체제는 민원의 상시 접수가 어렵고 합의제의 취지에 맞는 민원처리 절차의 공유가 제대로 이루어 질 수 없어서 제도의 활성화를 가로막는 또 다른 요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운데서도 옴부즈만들은 구민의 입장에서 서서 구민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옴부즈만 제도의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유사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안을 제시하는 등 적지 않은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전년도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넓은 안목으로 민원의 근본적 해결을 지향하였고 관련 법규의 치밀한 검토와 현장조사를 통해 행정기관에 대한 민원인의 불신을 불식시키려는 노력을 강화하였습니다.

따라서 전년도와 비교해 수치상으로는 비약적 성장이 없었어도 질적인 면에서는 의미있는 성장을 이루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민선7기의 출범과 함께 전국에서 최초로 구의 명칭 변경을 통해 지역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정체성을 강화하여 앞서가는 지방정부의 위상을 정립한 미추홀구의 옴부즈만으로서 드높은 자긍심을 가지고 2019년도의 활동에 임하겠다는 각오를 43만 구민께 드리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4조에 따라 2018년도 구민감사 옴부즈만 운영상황을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구민에게 공표합니다.

2019.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옴부즈만 일동

2 2018년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ombudsman 운영 평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 ombudsman은 2018년도의 활동기간 동안 임기가 다한 초대 ombudsman이 재 위촉되어 어느덧 제2기 활동이 시작된 한해였다.

초대 ombudsman 3인중에 1인만이 제 임기를 다 채워 재 위촉된 점은 ombudsman 제도 초기의 불안 정을 드러내는 것 같아 아쉽기도 하지만 차후 ombudsman 활동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험치가 최소 한이나마 축적되게 된 점은 다행스런 일이라 아니 할 수 없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 2018년도 운영실적은 총 77건의 민원을 접수하여 처리하였다 이 중 단순민원으로 판단하여 부서로 이첩하여 처리한 민원은 66건 이고 ombudsman이 직접 조사처 리한 민원은 11건이다

이것은 부서이첩 민원 68건과 직접조사 처리 민원 11건으로 총 79건을 접수처리 하였던 2017년도 실적과 유사한 실적이었지만 전년도에 비해 결정유형을 다양화 했고 결론에 이르기까지의 숙고 과정을 한층 더 철저하고 신중하게 하여 이상적인 처리결과에 접근하려고 노력하였다.

민원처리에 대한 활동을 요약해 보면,

첫째, 단일 법규가 아닌 여러 분야의 법규가 적용되는 복합민원의 해결에 있어 각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하는 종합창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점이다. 복합민원은 종래 부서 간 떠넘 기기식의 관행으로 해결기간이 장기화 되거나 민원이 확대되는 경향이 있어왔는데 ombudsman은 행정기관이 아닌 제3자적 입장에서 관련부서 전체와 순차적으로 협의하여 개별부서의 미시적 시 각에서는 발견하지 못했던 해결책을 도출할 수 있었고 이로 인해 기간의 장기화나 민원의 악화를 예방 하였다.

둘째, 행정기관이 관여 할 수 없는 사인간의 분쟁에 있어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점 이다. 공법과 사법의 영역이 구별되는 현행의 법체계에서 사인간의 분쟁에 공법의 적용을 받는 행정 기관의 개입은 허용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설령 법적 강제력이 수반되지 않는 최소한의 중재역할 만을 수행한 경우에도 양당사자중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일방 또는 쌍방에게는 불공평한 것으로 비춰져서 민원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므로 행정기관의 중재자로서의 역할은 소극적인 형태에 머물 러왔다. 그러나 민간인의 신분을 가진 ombudsman의 중재 역할은 그 신분으로 인한 중립성이 분쟁 당사자의 거부감을 감소시키고 그에 따라 중재의 결과도 폭넓게 수용하게 함으로써 분쟁해결에 대해 지불해야하는 사회적 비용이 상당부분 절감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셋째, 법규에 매몰되지 않는 공감능력의 실천이었다. 제기된 민원에 대한 법규해석이 일의적으로

명백하여 관련부서와 옴부즈만의 결론이 일치한다고 하여도 관련 부서의 1차 답변에 대한 민원인의 박탈감을 공감하여 신중하게 거듭 검토하고 상위 기관의 질의회신을 통해 동지의 결과를 확보하는 노력을 실천함으로써 민원인의 결과수용에 대한 당위성을 확보하였다. 이러한 노력은 차후 행정기관의 민원처리에 있어서도 널리 전파되고 수용되어야 할 실천과제 일 것이다.

이렇듯 2018년도 옴부즈만의 활동에 대해서 여러 면에서 긍정적 평가가 가능한 반면 옴부즈만 제도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 개선해 나가야 할 문제점 점 또한 이에 못지않게 나타나고 있다.

첫째, 출범 첫해부터 2018년 현재에 이르기 까지 크게 늘어나지 않은 옴부즈만 제도에 대한 구민의 인식도이다. 2017년도에 비해 2018년도에는 옴부즈만 실을 방문하거나 또는 전화로 민원상담을 요청하는 숫자가 미미하게 늘었지만 당초 목표로 설정했던 제도 활성화를 달성하기에는 현저히 부족한 수치여서 효과적인 홍보방법을 강구하여 이를 연중 지속시키는 일이 향후 몇 년간은 변함없는 최우선 과제가 될 것이다.

둘째, 미추홀구 옴부즈만의 운영체제인 ‘저예산 비상근 전원합의제’가 안고 있는 한계이다. 옴부즈만 3인이 각각 1주일에 1일 5시간씩 근무하는 현재의 근무형태로는 1주일에 2일의 근무공백이 발생하여 상시적인 민원접수가 불가능하고 1주일을 주기로 하는 근무일은 옴부즈만에게 맡겨진 업무의 단절성을 극복하기 어렵게 한다. 또한 각자의 근무일이 달라 한달에 한번 실시하는 정례회를 제외하고는 옴부즈만간의 회동이 이루어지지 않아 합의제의 취지에 맞는 업무의 공유가 매우 어렵다.

셋째, 옴부즈만의 ‘전문성 확보’의 문제이다.

미추홀구 옴부즈만은 세무사 1인과 시민단체 활동가 2인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다양한 분야의 민원을 처리하기에는 전문성에 있어서 한계에 봉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비슷한 문제를 선형했던 다른 지자체 옴부즈만의 운영방안을 참고할 필요가 있는데 그중에서 강원도 옴부즈만이 나 시흥시 시민호민관이 함께 운영하고 있는 전문가 자문단 제도는 전문성을 확보하는데 유용한 것으로 보여 향후 도입여부를 진지하게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민선7기가 시작되면서 진정한 지방분권화의 열망은 더욱 커질 것이고 ‘변화는 변방으로부터 일어난다’는 명제에 따라 구민들의 욕구는 더욱 다양하게 표출될 것이다.

이러한 급변하는 환경속에서 방향을 잃지 않고 시대가 요구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 옴부즈만은 끊임없이 고민하고 성찰할 것이다. 그러한 노력들이 단시간내에 비약적인 성과를 담보하지 않을지라도 꾸준히 행한다면 그리 멀지 않은 날에 ‘낙숫물이 바위를 뚫는다’는 오래된 금언을 실제로 체험할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갖고 2019년도를 시작하는 미추홀구 옴부즈만의 발걸음에 새로운 힘을 실어본다.

3 2019년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옴부즈만 운영 방향

2019년도 옴부즈만의 운영방향은 2018년도 운영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자 한다.

첫째, ‘저예산 비상근 운영 체제’의 개선이다. 옴부즈만 3인이 주1회씩 주3일 근무하는 현행 체제를 근무시간을 늘려 순번제로 주5일 근무하도록 하려고 한다. 이렇게 된다면 비근무일의 공백을 없애 공휴일을 제외한 모든 요일에 민원접수를 가능하게 하고 각 옴부즈만의 근무 주기도 단축하여 업무의 연속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옴부즈만 상호간에 정례회의에서만 회동이 가능해서 업무의 공유에 한계를 노출했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주1회의 임시회의를 활성화하여 합의제의 취지에 맞게 운영하고자 한다.

둘째, ‘현장조사 및 확인의 강화’이다. 지금까지 옴부즈만의 현장조사는 주로 옴부즈만 직접조사 민원에 한정하여 실시되어 왔다. 직접조사 민원의 수가 많지 않음에도 이렇게 한정적으로 실시되어온 것은 근무시간의 제약에 기인하는 바가 주된 원인이므로 근무시간을 늘려서 운영하게 될 경우 현장조사 및 점검의 범위는 부서이첩민원까지 확장할 수 있어 민원처리에 있어 확실한 끝맺음이 강화될 것이다.

셋째, ‘옴부즈만 제도 홍보의 지속적 강화’이다. 출범 첫해부터 중점을 두어온 제도의 홍보는 시간과 비용에 대비해서 그 효과의 신장은 뚜렷하지 않다. 그러나 가시적이지는 않더라도 미미하나마 인식의 저변이 확대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기존의 홍보방법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현장조사 시 대민접촉 등 새로운 홍보방법을 모색하여 적극적으로 실시해 갈 것이다.

제 2 부

옴부즈만 제도 소개

1. 옴부즈만 개념 11
2. 옴부즈만 제도의 필요성 11
3. 옴부즈만 기능과 특징 및 효용성 13

제2부 옴부즈만 제도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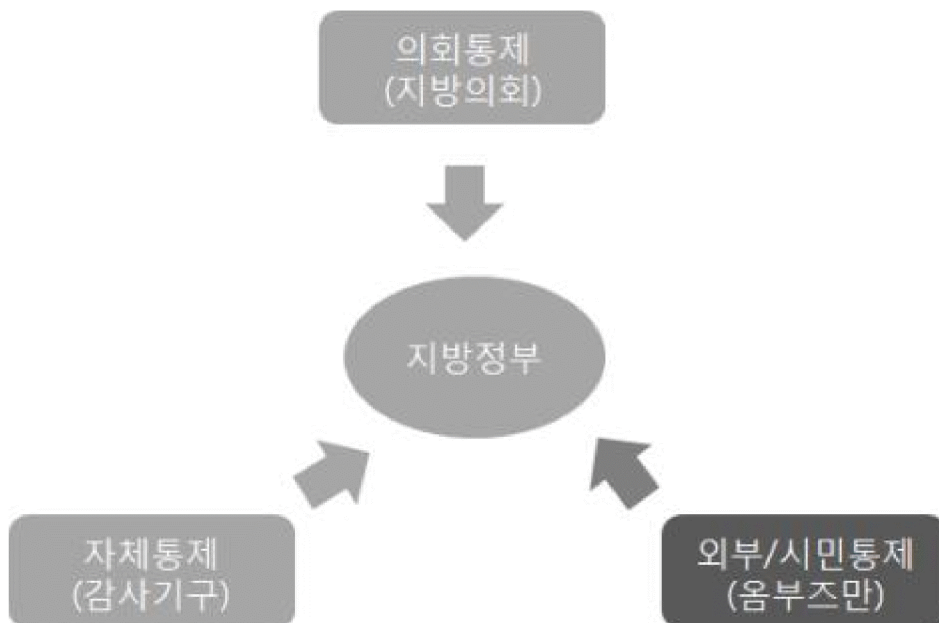
1 옴부즈만 개념

옴부즈만(Ombudsman)이란 스웨덴어로 남의 일을 대신해서 해 주는 대리인(Agent)이라는 뜻이며, 시민의 대리인으로 행정에 대한 시민의 고충을 접수하여 중립적인 입장에서 이를 조사하여 필요한 경우 시정조치를 권고함으로써 시민과 행정기관 양자 간에 발생하는 문제를 간이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임명된 사람 또는 비사법적 시민권의 보호제도임.

2 옴부즈만 제도의 필요성

(1) 행정의 권한 증대 및 다양화·복잡화·전문화

복지국가 지향에 따른 행정권 강화 현상은 행정재량권의 확대를 초래하여 행정기관에 의한 국민의 권리침해 가능성이 증대하고 있고 이에 반해 상대적으로 입법부나 사법부는 행정의 전문성 및 정보가 부족하고, 정당·압력단체(pressure group) 등은 상대적으로 권한과 기능이 약화되어 행정통제 및 견제 기능이 미흡하며, 특히 행정재량의 영역은 복잡·다양하여 의회에서 다루기에는 지나치게 개별적이며, 사법제도로 다루기에는 추상성을 띠고 있어 통제가 필요함.



(2) 기존 권익침해 구제제도의 한계

사법적 구제수단의 경우 사후통제 수단으로 소송비용이 많이 들고, 절차나 방법 또한 까다롭고 복잡하여 이용에 어려움이 있으며 이에 따라 행정의 시민권익 침해 현상이 증가하면서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기존의 권리구제 기능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임.

구 분	옴부즈만	행정심판	행정소송
목 적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 행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불편·부담을 받은 경우 권익구제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위한 행정 감독	행정작용에 의하여 침해된 시민의 권익구제
성 격	비쟁송제도	쟁송제도	쟁송제도
기 간	제한 없음	행정처분후 90일 이내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
범 위	위법·부당한 처분(사실행위) 부작위, 불편·부담 등 포괄적	행정의 적법성 및 합목적성	행정의 적법성 유무 (재량권 일탈·남용 포함)
접근성	접근성 높음	행정소송보다는 접근이 용이	접근성이 매우 어려움
비 용	무료	행정소송보다는 경제적 부담은 적은 편	경제적 부담이 높음

(3) 행정의 자기시정을 통한 신뢰성 확보

지방옴부즈만이 지자체 관할 내의 고충민원에 대해 전문적·중립적 시각에서 판단하여 시민과 행정 양자 간의 갈등을 완화하고, 행정의 자기시정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시민과 행정 간 원충 역할 및 상호 신뢰를 제고하는데 있어서 유용한 장치로 기능할 수 있으며, 특히 법규만능주의, 소극적 행정처리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민원을 지자체가 신속히 시정 처리함으로써 민원인의 심리적·경제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음.

(4) 고객중심의 행정가치 대두

과거 공공서비스의 제공은 주로 국가 통치행위의 일부로 간주되어 왔으나, 국가도 공공재 제공의 한 주체이며 국민은 ‘공공 서비스 소비자’라는 시각이 대두하고 있으며, 이러한 고객중심의 행정 가치는 국민인 고객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으로 이어져, 이를 위한 고객 현장제도가 널리 확산·보급됨.

3 ombudsman 기능과 특징 및 효용성

(1) ombudsman의 기능

① 행정통제 기능

ombudsman은 행정처분에 문제가 있다는 민원인의 주장에 대해 이를 조사하여 위법·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기관에 적절한 시정조치를 권고함으로써 행정을 감시하고 통제

② 갈등해결을 위한 조정기능

ombudsman은 행정과 시민의 중간적 입장에서 조정역할을 함으로써 사법구제 제도의 한계로 인해 양자 간 해결할 수 없는 분쟁과 갈등을 해결하는 기제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또한, 비용의 부담 없이 위법·부당한 행정에 대한 조사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외된 계층에 대한 안전장치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측면도 있음.

③ 행정개혁 기능

행정의 속성상 한번 결정되면 그 결정 내용을 선례로 삼아 이를 계속 지속하려는 관성을 가지고 있어 행정기관 스스로 개선이 어려우며, ombudsman은 이러한 관성을 깨트려 위법·부당한 행정관행이 개선되도록 자극을 줄 수 있어 행정개혁을 이루는 데, 중요한 수단으로 작용하고 특히, 의견표명·시정권고 등의 형태로 나타나는 “부드러운 법률(soft law)”의 적용을 통해 타 행정기관이 행정처분 등을 할 때에 처리기준이 될 수 있으며, 감사를 의식한 소극적 행정 행태를 바로잡는 순기능이 있음.

④ 행정정보의 공개 기능

ombudsman은 제기된 민원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관계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으며, 정보공개 요청 시 신청인에게 열람·복사하여 줄 수 있는 등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 시킴.

⑤ 민주적·정치적 대변(代辯) 기능

계층·부문·지역·집단 간 이해관계에 따라 다양한 입장과 견해를 가질 수 있고, 이해가 상충될 경우 행정기관은 대체로 힘 있는 다수를 대표하는 결정을 하게 됨. 이러한 과정에서 소수집단, 소외 및 취약계층은 행정기관의 결정에 의해 권익을 침해당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사회적 약자의 권익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ombudsman은 이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기능을 수행

(2) 옴부즈만의 특징

- 옴부즈만은 행정부 및 입법부로부터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성을 가짐.
- 옴부즈만은 법률·행정 등의 분야에 전문지식이 뛰어난 인격자 중에서 선출
- 옴부즈만은 행정기관의 처분과 달라 행정작용을 직접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단지 취소 및 변경을 관계기관에 요청 또는 권고할 수 있음.
- 행정소송, 행정심판 등에 비해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접근 용이성을 가지고 있음.
- 민원을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 처리하기 때문에 대개 무료
- 옴부즈만은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공개
- 대부분 개인의 고충민원 처리와 관계됨.

(3) 옴부즈만의 효용성

- 지방단위에서 행정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옴부즈만의 존재만으로도 옴부즈만이 없을 때보다도 더 신중한 행정행위를 할 것이 예상됨.
- 지방의회는 행정절차와 실무를 감독하고 개선하는데 더욱 용이하게 되어 이를 더 관찰하고 개선할 수 있음.
- 옴부즈만은 행정행위로부터 기인하는 대중의 불만과 어려움을 감소시키며, 시민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이해를 도울 수 있음.
- 시민들이 자신들의 생활 속에서 상당부분 관계를 맺고 있는 관료에 대한 두려움, 부정적 인식을 감소키는 효과가 있음.
- 특히 지방자치 단체가 자기 사무에 대한 고충을 자체적으로 처리하게 되어 지역차원의 자율적 해결을 유도해 내고, 이로 인해 중앙으로부터 독립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음.



제 3 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개요

1. 도입배경과 추진경과 17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옴부즈만 소개 18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옴부즈만 운영 일반 19
4. 고충민원 처리절차 20

제3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개요

1 도입배경과 추진 경과

(1) 도입배경

- 우리 구는 인천의 구도심으로 재개발 지역이 많고 이에 따른 복잡하고 다양한 고충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기존의 행정구제 제도만으로 구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에 구민과 행정기관 양자 간에 발생하는 문제를 제3자의 중립적 입장에서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구 직제와는 별개의 독립적 조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추진하여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고자 함.

(2) 운영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3) 추진경과

- 2015.09.30. : 「인천광역시 남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공포
- 2015.11.17. : 인천광역시 남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계획 수립
- 2016.06.15. : 인천광역시 남구 옴부즈만 공개모집 공고
- 2016.06.23. : 인천광역시 남구 옴부즈만 구의회 동의대상자(위촉예정자) 선정
- 2016.07.18. : 인천광역시 남구 옴부즈만 3인 위촉
- 2016.08.01. : 인천광역시 남구 옴부즈만 개소
- 2016.11.29. : 인천광역시 남구 옴부즈만 1인 해촉
- 2017.03.06. : 「인천광역시 남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공포
- 2017.05.15. : 인천광역시 남구 옴부즈만 1인 신규위촉
- 2017.06.29. : 인천광역시 남구 옴부즈만 1인 해촉
- 2017.09.01. : 인천광역시 남구 옴부즈만 1인 신규위촉
- 2018.07.01.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옴부즈만으로 명칭 변경
- 2018.07.18.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옴부즈만 1인 재위촉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옴부즈만 소개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옴부즈만 구성개요

- 옴부즈만 수 : 3명
- 임기·신분 : 2년(1회에 한해 연임가능), 비상임 명예직
- 직 무 : 고충민원 상담 및 조사처리,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 등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옴부즈만 구성현황

옴부즈만		주요경력	위촉기간
손보경		○ 현) 골목작은도서관장 ○ 전) 인천여성회 중동구지부장	2017. 05. 15 ~ 2019. 05. 14.
김태웅		○ 현) 하석용·김태웅 세무사 사무소 공동대표 ○ 전) 중앙세무법인 세무사	2018. 07. 18.~ 2020. 07. 17. (재 위 촉)
강원구		○ 전) 인천도시공사 비상임이사 ○ 전) 인천발전연구원 행정실장	2017. 09. 01.~ 2019. 08. 31. (2019.1.31.자료 해촉)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옴부즈만 운영체계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옴부즈만 운영 일반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옴부즈만의 자격

- 토목공학, 건축공학, 회계학, 법학, 행정학 등 관련분야의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한 사람
-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건축사·세무사·공인회계사·기술사·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옴부즈만의 임기 및 구성

- 2년 (1회에 한해 연임 가능)
- 옴부즈만의 정수는 3명 이내로 하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동의 후 구청장이 위촉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옴부즈만의 직무

- 고충민원의 조사·처리
-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옴부즈만에게 의뢰한 사건의 조사·처리
- 구민들의 권익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각종 활동 수행
- 국민권익위원회 등 국내·외 기구·기관들과의 교류·협력
- 그 밖에 옴부즈만 회의의 의결을 거쳐 필요하다고 결정한 활동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옴부즈만의 직무관할

- 구 및 그 소속기관 등
- 구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지방공기업, 출자기관, 출연기관
- 구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옴부즈만의 권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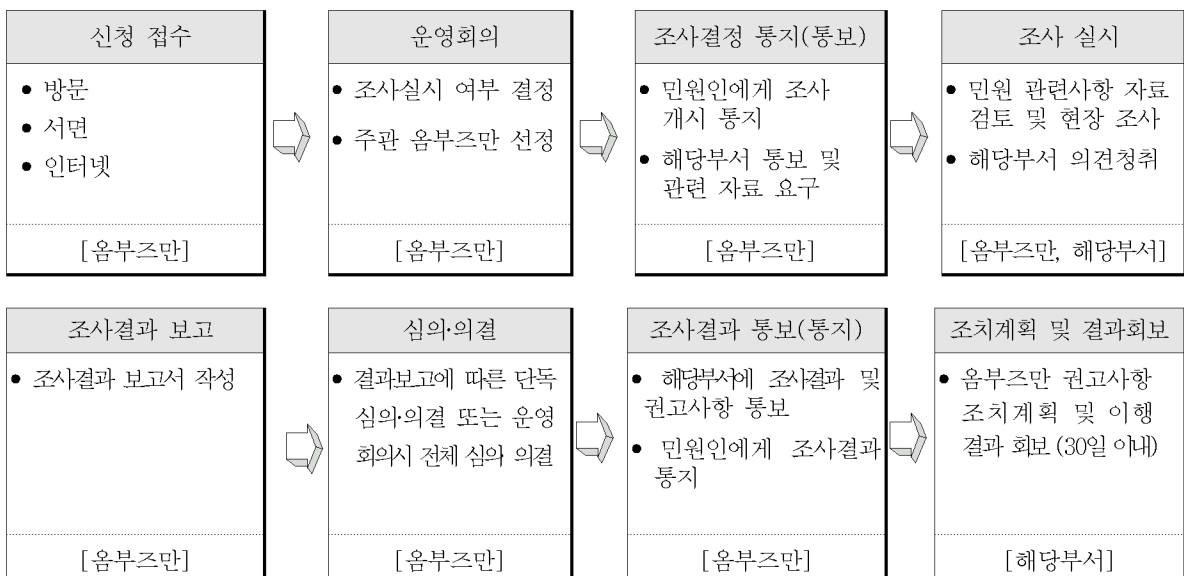
- 관계 기관 등에 대한 질문 및 현황청취 그 밖에 필요한 협조요청
- 조사내용에 대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 관계 소속기관 등의 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법·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감사의뢰

4 고충민원 처리절차

(1) 고충민원의 개념

구 분	일반적 정의	구체적 정의
내 용	○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함	○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한 처분 (사실행위를 포함한다)이나 부작위 등으로 인하여 권리·이익이 침해 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이 되는 사항의 해결 요구 ○ 민원사무의 처리기준 및 절차가 불투명하거나 담당공무원의 처리 지연 등 행정기관 등의 소극적인 행정행위나 부작위로 인하여 불편 또는 부담이 되는 사항의 해소 요청 ○ 불합리한 행정제도·법령·시책 등으로 인하여 권리·이익이 침해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이 되는 사항의 시정 요구 ○ 그 밖에 행정과 관련한 권리·이익의 침해나 부당한 대우에 관한 시정 요구

(2) 고충민원 처리절차



(3) 고충민원 신청방법

- 직접방문, 모사전송 및 우편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독정리로 95 옴부즈만실(본관 5층)
- 인터넷 신청 : 고충민원 게시판에서 신청 가능

(www.michu.incheon.kr : 홈 > 주민참여 > 구민감사옴부즈만 > 고충민원 신고)

The screenshot displays the '주민참여' (Citizen Participation) section of the Michu Incheon website. It includes a sidebar with navigation links such as '소통공간', '주민참여', '주민참여대상', '주민참여방법', '미추홀구', and '개인정보'. The main content area features a '주민참여' banner with the text '주민에게 모든 것을 공개하고 주민이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Below this, there is a section for '구민감사옴부즈만' (Citizen Complaint Ombudsman) with a list of council members (e.g., 김태웅, 손보경) and their roles. To the right, there is a table of '구민감사옴부즈만' cases, showing case numbers, subjects, dates, and statuses.

번호	제 목	공개	작성일	작성일	제출일	대답일	대답률
117	미추홀구 옴부즈만 인사위원회 등...	X	2018-01-14	000	답변완료	검지함	
116	김해인주목구목 불법 주차	X	2018-01-01	000	답변완료	검지함	
115	하루의 하루 안함	X	2018-12-31	000	답변완료	검지함	
114	학익 신도시개발공사에 대해 불...	X	2018-12-06	000	답변완료	검지함	
113	인위적으로 도로를 좁게 만들어...	X	2018-12-18	000	답변완료	검지함	
112	인위적으로 도로를 좁게 만들어...	X	2018-12-14	000	답변완료	검지함	
111	김해인주목구목 불법 주차	X	2018-12-01	000	답변완료	검지함	

[※ 구 홈페이지 고충민원 신청 게시판 화면]

- 문의전화 : 032-880-4585, 5978 (팩스 032-880-4807)

(4) 고충민원 제외(이첩·각하) 대상

- 단순 일반민원 사항
- 행정심판, 행정소송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 법령에 따라 화해·알선·조정·중재 등 당사자 간의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 감사원이나 그 밖의 행정기관에서 감사가 진행 중인 사항
- 사인 간의 권리관계 또는 사생활에 관한 사항
- 구의회에 관한 사항
- 검찰·경찰 또는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
- 옴부즈만이 조사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항

(5) 고충민원 처리결과 유형

구 분	직접조사 여부	내 용
시정권고	○	피신청인의 처분·사실행위·부작위 등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이를 취소·변경·개선하거나 이행하는 등의 적절한 시정이 필요한 경우
의견표명	○	피신청인의 처분·사실행위·부작위 등이 위법·부당하지는 않으나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도개선	○	법령 그 밖의 제도나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 정	○	다수인이 관련되거나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고충민원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원에 의하여 조정
합 의	○	조사 중이거나 조사가 끝난 고충민원에 대한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 또는 당사자 간의 자발적인 합의 성립된 경우
기 각	○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의해소	○	신청인의 요구사항이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신속히 해결방안을 안내하여 해소되거나 피신청인이 자발적으로 시정하여 해소된 경우
심의종결	○	신청인의 요구사항 관련 행정기관에서 수용하기가 어렵거나 뚜렷한 해결방안 제시 또는 관계인과 조정·중재가 불가하여 조사 진행이 어려운 경우
이 첩	×	관계 행정기관 등에 이첩하는 경우
각 하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7조에 열거된 사항에 해당하여 각하하는 경우
상담안내	×	민원상담 과정에서 단순민원 내용으로 해당부서로 안내 또는 관련 부서 담당자 연계처리 하는 경우
상담해소	×	민원상담 과정에서 단순민원 내용으로 해당부서 담당자 의견청취 및 관계 법령 확인을 통해 민원내용을 즉시 해소하는 경우

2018년도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옴부즈만
운영성과 보고서

제 4 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옴부즈만 운영성과

1. 고충민원 처리 현황 25
2. 옴부즈만 직접조사 결정 민원 처리현황 29
3. 기타 민원 처리현황 32

제4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옴부즈만 운영성과

1 고충민원 처리 현황

(1) 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

접수(계)	직접조사	이첩	각하	철회
77	11	64	2	0

(2) 접수 방식별 현황

총계	방문	인터넷	우편	팩스	기타
77	9	66	0	0	2

(3) 월별 접수현황

총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77	6	2	4	3	6	12	10	18	1	8	2	5

(4) 민원 분야별 접수현황

총계	도시 계획	건설 건축	청소 환경	보건 위생	도로 교통	세무 회계	사회 복지	공원 녹지	경제 지원	일반
77	6	15	14	4	28	0	1	2	0	7

(5) 직접조사 결정 민원 처리현황

직접조사 (계)	완료	진행	조사완료 (계)	취하	기각 (심의종결)	중재	심의 해소	의견 표명	시정 권고
11	11	0	11	0	1	2	1	5	2

(6) 옴부즈만 시정권고 · 의견표명에 대한 관련부서 수용여부 현황

연번	민원내용	시정권고(의견표명)	관련부서 회신사항	수용여부	옴부즈만
1	신청인: 김○○	【의견표명】	자원순환과	수용	강원구
	(구)동양화학 부지에 설립예정인 건설폐기물 재활용 처리시설로 인해 발생이 우려되는 비산먼지와 소음피해 방지책 요구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승인 시 비산먼지, 소음 등으로 인한 민원발생이 예상되므로 시설승인이전에 철저히 점검하고 구체적인 민원이 제기되면 적절하게 대응할 것을 의견으로 표명함	시설승인 시에 요건 및 상황을 철저히 검토하고 조사하여 처분의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향후 민원이 제기되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함		
2	신청인: 유○○	【의견표명】	건설과	수용	김태웅
	관교동 공영주차장 신축공사장 인근 주택에 대해 사고예방 조치가 미흡할 뿐 아니라 차별적으로 행하여지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여 줄 것을 요구	사고예방조치인 흙막이 공사를 민원인 건물 지반을 제외하고 다른 인근에만 실시한 이유는 토질 조사를 통해 그 필요성이 없어서 하지 않았음을 설명하고 수일 후 콘크리트 공사가 완료되면 흙막이 공사의 필요성이 없어지므로 그때까지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민원인 앞에서 교통정책과 담당자에게 권고 함으로써 민원인의 이해를 구함.	흙막이 공사가 선별적으로 행해진 것이 차별적 조치로 인식되지 않도록 사전에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함을 인지시키고 콘크리트 공사시까지 강화된 주의를 기울이도록 의견을 표명하였고 부서에 서도 이를 수용함.		
3	신청인: 김○○	【시정권고】	구청장	조건부 수용	김태웅
	30년 이상의 장기간 동안 공원시설 내에서 불법설치되어 주변 단체인 새마을협의회가 사무실로 사용해온 컨테이너 박스 철거 요구	관변단체의 지역사회발전에 대한 공헌도를 감안할 때 새마을협의회 사무실을 일방적으로 폐쇄할 수 없으므로 사무실 용도의 컨테이너 박스 설치가능한 구소유부지를 대부료를 받고 합법적으로 대부할 것을 권고	옴부즈만의 권고사항을 보충적 해결방안으로 두고 우선실시 가능한 다른 방안을 강구하도록 인권센터로 이첩함		

연번	민원내용	시정권고(의견표명)	관련부서 회신사항	수용여부	옴부즈만
4	신청인: 이○○	【의견표명】	자동차관리과	수용	김태웅
	수감중에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기간이 만료되어 이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되자 수감중인 상태에서 보험가입은 불가능했음을 이유로 과태료 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함	수감중이라는 사실은 보험가입의무가 면제되는 법정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나 민원인이 심정적으로 승복하기 어려운 요소도 있으므로 처분의 효요성 판단이 아니라는 것을 상위 중앙부처의 의견을 받아 민원인에게 제시 함으로써 민원인의 이해를 이끌어 내도록 의견을 표명함.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여 처분의 타당성을 확인하고 이를 민원인에게 제시하여 민원인이 이를 이해함으로써 민원을 종결 처리함		
5	신청인: 이○○	【의견표명】	건설과	수용	김태웅
	민원인의 주소지 앞 골목 도로 안쪽에 빌라가 신축되면서 골목도로 일부분만 포장이 되고 일부분이 비포장 상태로 남아있어서 생활상·미관상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구청에서 도로를 포장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해당도로가 사유지임을 이유로 거부한데 대해 소극적 행정이라고 주장하며 민원을 제기함.	사유지인 관계로 도로 포장시 소유자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나 해당 사안은 신설 도로를 포장하는 상황이 아니라 기존도로를 유지 보수하는 경우이므로 소유자에게 재산권의 행사를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는 상황임을 감안하여 구에서 적극적으로 소유자에게 이러한 상황을 설명하고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 도로 포장을 진행하여 민원인의 요구조건을 해결하여 주는 것이 타당 할 것으로 판단됨.	구에서 적극적으로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구하고 2019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해당도로를 포장하겠다는 답변을 민원인에게 통보하여 민원을 해결함.		

연번	민원내용	시정권고(의견표명)	관련부서 회신사항	수용여부	옴부즈만
6	신청인: 주안1구역 주택재개발 조합	【의견표명】	도시창생과	수용	김태웅
	주안1구역 재개발 반대 모임 측이 재개발 조합 측 에서 실시한 보궐선임 추 천방법의 적법성 여부와 대의원회 및 정기총회의 유효성에 대한 법적 검토 를 요구함	· 대의원8명이 대의원 후 보 명단에 있는 자를 모두 선택하여 추천한 후보를 임시총회 결의를 거쳐 대 의원으로 선임한 절차의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 되나 최종적인 적법 여부 의 판단한 사법부의 판단 에 따라야 할 것임. · 민원인들의 주장대로 보 궐선임이 무효라면 대의 원회 또한 무효일 것이나 정기총회의 의결은 대의 원회 구성과는 별개의 것 이므로 정기총회의 의결 요건을 충족한 경우 유효 일 것으로 판단됨.	옴부즈만 법률 검토 결과 구청장에게 보고		
7	신청인: 이00	【시정권고】	위생과	조건부 수용	김태웅
	민원인은 식품위생법 제 37조에서 영업장 확장 시 요구하는 신고의무를 이행함이 없이 영업장을 무단확장하여 영업하다 적발되어 구청으로부터 시정명령처분 사전통지 를 받고 이에 대해 불복 하며 민원을 제기함.	· 음식점업의 경우 식품 위생법상 영업장 면적이 필수 인허가 사항이며 이에 대한 변경은 중요 한 변경사항에 해당하여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 민원인의 사업은 음식 점업에 해당할 뿐 아니 라 해당 임시 가판대의 사용 성격상 해당사업을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 21조 제2호 및 동법 시 행규칙 별표15호에 의 해 ‘즉석판매제조가공 업’으로 해석되므로 이 경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6조 제6호에 따라 사 업장면적이 중요한 사항 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신고의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민원인이 자발적으로 사전통지상 명령을 이행 하여 위법상태를 제거함 으로써 민원종결		

2 옴부즈만 직접조사 결정 민원 처리현황

연번	접수 일자	접수 유형	신청인	민원제목	처리결과	주 관 옴부즈만	완료 여부
1	1. 24.	방문	심○○	지구단위계획(수봉지구)에 따른 재산권 침해 검토 요청	민원인이 소유한 필지는 ‘공동개발 지정’인 상태이므로 인근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을 수 없어 개발이 불가능하므로 요건을 완화할 수 있는 ‘공동개발권장지역’으로 변경할 것을 안내하여 종결 처리함.	김태웅	완료 (심의종결)
2	3. 14.	방문	김○○	학익동 성당 도로점용료 부과 관련 민원	학익동 성당측에 당해 토지의 도로 사용은 건축허가 당시 건축법상의 의무사항으로 사용료를 발생시킬 수 없으므로 부과된 도로점용료가 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님을 이해시켜 민원인 측에서 이를 수용함.	김태웅	완료 (기각)
3	4. 25.	방문	차○○	주안 고운누리 아파트 인접 신축공사 피해보상 관련 민원	사인간의 분쟁에 행정기간의 개입이 한계가 있으므로 민간인 신분인 옴부즈만이 중재하여 상호 양보를 유도함.	김태웅	완료 (중재)
4	5.16.	방문	박○○	주안동 소재 건물 담장 균열 원상복구 요구 민원	민원인이 담장 균열의 원인으로 주장하는 가설 건축물 소재 토지소유자의 자발적 담장복구 의사를 전달하여 민원종결	김태웅	완료 (중재)
5	7.30.	방문	김○○	㈜DCRE 건설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관련 민원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승인 시 비산먼지, 소음 등으로 인한 민원발생이 예상되므로 시설승인이전에 철저히 점검하고 구체적인 민	강원구	완료 (의견표명)

연번	접수 일자	접수 유형	신청인	민원제목	처리결과	주 관 옴부즈만	완료 여부
					원이 제기되면 적절하게 대응 할 것을 의견표명		
6	8. 1.	방문	최○○	관교동 공영주차장 신축공사 피해 방지 조치요구	흙막이 공사 선별적 실시의 이 유를 설명하고 옹벽공사 전까 지 흙막이 설치가 안된 민원인 주택에 각별한 관심과 주의를 기울일 것을 확약함으로써 민 원종결	김태웅	완료 (의견표명)
7	8.22.	방문	김○○	공원시설 내 불법설치 컨테 이너 박스 철거 요구 민원	약30년이상 지역봉사를 목적으로 활동해온 새마을협의회 및 부녀회 의 활동 취지를 고려하여 목적적합 한 구 소유부지를 대부료를 받고 합법적으로 대부하여 줄 것을 권고 하였으나 권고안 시행전에 다른 방 안을 강구하여 해결하는 것으로 결 정됨.	김태웅	완료 (시정권고)
8	9. 12.	부서 의뢰	이○○	의무보험 미 가입 차량 과 태료 부과처분 불복민원	수감중의 과태료 부과처분이 법정 의무보험가입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미추홀구의 입장을 국토교통부 질의회신을 통해 재차 확인하여 줄 것을 요 구하는 민원인의 뜻에따라 이를 부서에 의견으로 표명하고 민원 을 종결함.	김태웅	완료 (의견표명)
9	10.2.	방문	이○○	골목도로 포장요구 거부 처분 불복민원	도로공사가 도로신설이 아닌 기존도로의 이용개량 행위에 해당 하므로 도로부지 소유자 의 재산권 행사를 부당히 제약 할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의 동 의를 얻어 포장 공사 진행할 것을 의견으로 표명함.	김태웅	완료 (의견표명)
10	10.24.	부서 의뢰	주안구역 재개발 반대모임	주안1구역 관련 민원 법 적 쟁점 검토	·보궐선임된 대의원 31명에 대한 추천방법의 적법성은 유효한 것으 로 판단 ·대의원 보궐선임의 무효라면 그	김태웅	완료 (의견표명)

연번	접수 일자	접수 유형	신청인	민원제목	처리결과	주 관 옴부즈만	완료 여부
					이후의 대의원회의도 효력이 없으나 요건을 충족한 정기총회의결사항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음을 의견으로 표명함.		
11	11.14.	방문	이○○	영업장 무단확장 시정 명령 사전통지에 대한 불복 민원	민원인이 자발적으로 사전통지 상의 명령을 이행 하여 위법상태를제거 함으로써 민원종결.	김 태웅	완료 (시정권고)

3 기타 민원처리 현황(이첩 · 각하 · 철회)

연번	접수일	민원인	담당 부서	민원내용	진행결과
1	2018.1.13.	이00	건설과	방치된 자전거 처리요청	답변완료 (현장 조사결과 방치된 자 전거가 없어서 민원이 해 소되었음을 통보)
2	2018.1.4.	문00	교통정책과	주말주차단속요청	답변완료 (주차단속 강화 및 신고방 법안내)
3	2018.1.18.	신00	건축과, 교통정책과	보훈병원 주차장 규모와 공 사 감리에 관한 문의	답변완료 (교통정책과로부터 주차 장 시설규모에 대한 답변 과 건축과로부터 감리자인 한국건설공사가 민원재발 방지를 약속했다는 답변을 받아 통보함)
4	2018.1.20.	권00	주안6동, 건강증진과	민원인이 알코올 중독자인 이웃 주민의 밤낮 없는 소란행위로 인해 정신적피해를 호소하며 알코올 클리닉 정신건강상담을 받도록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	답변완료 (건강증진과 정신건강복지 사와 동 사회복지사가 동 행 방문하여 상담하고 미 추홀구 정신건강 복지센터 를 이용하도록 안내함)
5	2018.1.31.	박00	교통정책과	노적산로 불법주차차량 단속 요청	답변완료 (해당 구역 주정차 단속 집중 실시 및 자동차 관리과 와 협조하여 밤샘주차 단속 도 실시할 예정임을 안내)
6	2018.2.2.	이00	도시관리과 교통정책과	도로에 박아놓은 말뚝과 도 로점거 페타이어 제거 요청	답변완료 (해당 구간에 설치된 말뚝 은 시선유도봉으로 시야확 보 곤란 및 차량통행 어려 움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 방을 위해 설치된 것이며 도로변에 적치된 페타이어 는 현장단속 및 계고를 완 료하였고 추후 미정비시 수 거예정임을 통보)

연번	접수일	민원인	담당 부서	민원내용	진행결과
7	2018.2.9.	오00	환경보전과	주인6동 소재 전자제품 매장앞에서 직원들이 마이크를 들고 고객행위를 하고 있어 주변업장들이 피해를 보고 있으며 행인들에게 불편감을 초래함.	답변완료 (전자매장 측에 민원사항 설명하고 스피커 볼륨을 최대한 줄여 사용하도록 행정지도 하였음을 통보함)
8	2018.3.6.	김00	교통정책과	불법주정차 단속요청	답변완료 (민원의 발생지인 태극아파트 인근 사거리에 주정차 단속 강화계획과 신고전화를 안내)
9	2018.3.7.	최00	건축과	주인5동 제이카운티 공사현장으로 인해 인근주민의 불편해소 요청	답변완료 (건축관계자에게 보도 원상복구 요청하여 원상복구를 하였고 안전관리 철저를 수행하여 피해발생 최소화를 요청하였음을 안내함)
10	2018.3.13.	박00	교통정책과	인하로352번길 양방향 주차로 인한 주차불 설치요청	답변완료 (중앙선에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지방경찰청 교통안전 시설 심의를 거쳐 중앙선이 설치된 이후에 가능한 사안 이므로 중앙선설치를 미추홀 경찰서에 요청하였음. 중앙선이 설치된 후 시선 유도 불 설치 검토 예정임을 안내)
11	2018.4.19.	김00	교통정책과	횡단보도 설치요청	답변완료 (횡단보도를 포함한 교통안전 시설의 설치 변경 제기는 경찰청 교통안전시설물 심의 결과에 따라 결정 되어지는 사항이므로 미추홀경찰서 교통과로 상담받기를 안내함)
12	2018.4.26.	유00	도시관리과	불법적치물 단속요청	답변완료 (단속강화예정임을 통보함)
13	2018.5.4.	김00	보건체육과	근린체육시설 관리요청	답변완료 (근린체육시설은 미추홀구 주민의 생활체육시설로써 문제를 제기한 특정단체의 독점적 운영을 비롯한 위법사항들이 근절되도록 계도할 것과 시설주변의 쓰레기를 시설 관리자를 통해 조속히 정리하겠다고 답변함)

연번	접수일	민원인	담당 부서	민원내용	진행결과
14	2018.5.10.	박00	도시관리과	불법광고물 철거요청	답변완료 (해당간판 광고주에게 자진정 비 계고처분 예정이며 미 이행 시 후속행정절차 진행 할 것 임을 통보)
15	2018.5.24.	안00	토지정보과	무자격 부동산 중개 및 자격증 대 여중개업고발	답변완료 (무등록자 고발 예정임을 통보)
16	2018.5.25.	박00	교통정책과	대형차의 도로변 불법주차 단속 요 청	답변완료 (집중단속 실시계획 통 보 및 밤샘주차단속 안 내)
17	2018.5.29.	김00	건설과	하수구 약취 제거 요청	답변완료 (민원요건 불비로 각하결정 통보하며 요건 구비하여 재제기 할 것을 안내)
18	2018.6.5.	한00	인천도시공사	횡단보도와 버스정류장 관련	답변완료 (인천도시공사로 이송하여 적극검토요청하고 검토결 과를 관리사무소로 회신하 도록 조치)
19.	2018.6.7.	최00	교통정책과	도로침범 불법주차 단속요청	답변완료 (주차금지 시설물 설치를 위해 주정차 금지구역지 정을 미추홀경찰서에 요 청하였으며 반사경설치는 6월말 예정임을 통보)
20.	2018.6.7.	문00	도시관리과 자원순환과	전단지 불법투기	답변완료 (관련 동 주민센터와 연 계하여 계도 및 과태료 부과예정임을 통보)
21.	2018.6.9.	정00	환경보전과	건설현장 소음공해 신고	답변완료 (건설현장 소장에게 민원 사항을 설명하고 주말작 업을 최대한 자제하도록 권고함)
22.	2018.6.9.	조00	건설과	도로 싱크홀 복구 요청	답변완료 (복구완료 통보)

연번	접수일	민원인	담당 부서	민원내용	진행결과
23.	2018.6.17.	민00	환경보전과	건설현장 소음공해 신고	답변완료 (현장소장에게 민원사항 설명하고 이른 아침 체조 시 스피커 볼륨 최대한 줄여 사용할 것과 공사소음을 줄이도록 행정지도할 것임을 통보)
24.	2018.6.19.	하00	교통정책과	인도 주정차 차량 단속요청	답변완료 (주기적 단속계획 및 요청시 즉시 단속예정임을 통보)
25.	2018.6.19.	하00	자원순환과	야외주차장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요청	답변완료 (동 청소담당자를 통해 해당빌라에 쓰레기 배출 요령 안내문 배부 및 빌라 관리인 지정, 주민간 빌라 청소등을 안내)
26.	2018.6.22.	김00	건축과	주안북부역 출구 불법가판 단속	답변완료 (불법가판자들에게 행정 계도하고 민원인에게 유선회신)
27.	2018.6.22.	문00	자원순환과 도시관리과 주안6동	불법전단지 제거 요청	답변완료 (도로에 살포된 불법 전단지를 수거하고 과태료 부과예정임을 통보)
28.	2018.6.29.	곽00	보건행정과 송의4동	악취와 모기로 인한 방역요청	답변완료 (현지 출장을 통해 방역을 실시하고 추후 추가적 방역예정임을 통보)
29.	2018.6.29.	박00	도시관리과	공동주차구역 불법적치	답변완료 (불법적치물 강제수거 조치하였으며 해당지역을 집중단속구역으로 지정하여 지속적인 계도와 정비 예정임을 통보)
30.	2018.7.11.	이00	감사실	주민센터 민원담당 직원 업무태만 고발	답변완료 (민원처리가 늦어진 점을 사과하고 차후 동일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주의조치 하였음을 알려 이해를 구함)
31.	2018.7.13.	강00	자동차 관리과	공동주차구역 단속촉구	답변완료 (담당자가 현장조사한 후 행정지도를 실시하였고 재적발시 행정처분을 할 예정임을 통보)

연번	접수일	민원인	담당 부서	민원내용	진행결과
32.	2018.7.25.	이00	환경보전과	앞 건물 신축공사로 인한 소음	답변완료 (현장소음을 측정한 결과 생활소음을 초과하여 행정처분이 진행 중임을 통보)
33..	2018.7.25.	박00	여성아동 복지과	도화이편한 세상62단지 어린이집 개소 요청	답변완료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 추진 중임을 알리고 기타 문의사항을 위해 전화번호 안내)
34.	2018.7.25.	윤00	용현3동	무단투기된 쓰레기로 인한 악취 오염 해결요청	답변완료 (쓰레기 전량 수거 및 지속적 단속 계획 알림)
35.	2018.7.25.	박00	환경보전과	미추홀구 실시간 악취 모니터 링 시스템구축 요청	답변완료 (아파트에 무인악취포집기를 설치하여 악취발생시 포집한 뒤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할 예정임을 통보)
36.	2018.7.25.	김00	공원녹지과	묘지이전 및 정리 건의	답변완료 (허가 및 신고절차 안내)
37.	2018.7.27.	김00	교통정책과	관교동 공용주차장 공사 관련 민원	답변완료 (감리자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공사의 타당성을 설명하고 설득함)
38.	2018.7.31.	문00	송의2동	쓰레기 무단투기단속	답변완료 (쓰레기 수거 및 지속적 단속계획 알림)
39.	2018.8.6.	박00	주안1동	무단투기 쓰레기 청소요청	답변완료 (청소 후 결과 통보)
40.	2018.8.6.	신00	건설과 교통정책과 공원녹지과 건축과	보훈병원공사로 인한 제반문제 시정요구	답변완료 (건설과 : 인도 경사에 대해 하자보수 통보 교통정책과 : 법정주차대수 요건 충족한 상태이며 앞으로 주차공간을 추가로 확보예정임을 통보 공원녹지과 : 녹지공간 확보를 위해 병원과 협의 중임을 통보 건축과 : 관계법령에 따라 시공 되었으며 건축허가 역시 적법함을 통보)

연번	접수일	민원인	담당 부서	민원내용	진행결과
41.	2018.8.6	곽00	송의4동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요청	답변완료 (공동주택 및 인근 주택에 분리배출 홍보 및 청결 유지 협조요청 하고 무단 투기 집중 단속 예정임을 통보)
42.	2018.8.8.	이00	공원녹지과	송학배드민턴장 독점 및 우선점유 이용에 관한 건	답변완료 (배드민턴 구장내 우선 점유 등 독점 방지에 관하여 이용객을 계도하고 안내문 게시 조치)
43.	2018.8.8.	최00	용현3동	인하대 홈플러스 주변 주차단속 강화요청	답변완료 (집중단속 실시 예정 통보)
44.	2018.8.8.	공00	건축과	거주지 인근 건축공사로 인한 민원인의 건물 붕괴우려에 대한 해결책 요청	답변완료 (신축공사 건축관계자에게 계측관리 등을 실시하여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과 민원인과 민사적인 다툼에 관해서는 원만한 합의를 권고하였음을 통보)
45.	2018.8.13.	김00	감사실	유통기한이 만료된 사우나 회원권 보상요청	각하 (당해 민원은 사인간의 계약에 관한 문제로 행정기관의 개입여지가 없는 사항임을 통보)
46.	2018.8.13.	박00	교통정책과	주차봉 추가 설치 요청	답변완료 (주차봉 추가 설치하는 법령상 허용되지 않아 불가하며 주차차 단속을 강화할 계획을 통보)
47.	2018.8.14.	최00	건설과	수봉산입구 도로상 구멍 보수요청	답변완료 (조치완료 통보)
48.	2018.8.16.	김00	감사실	쓰레기 수거차량 불법유턴 신고	답변완료 (환경미화원에게 주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향후 유사 사례 재발 방지 통보)
49.	2018.8.19.	김00	지혜로운 시민실	하나래 도서관 신청 희망도서 6개월 지연	답변완료 (희망도서는 현재 모두 입고 하여 9월중에 제공할 예정이며 차후 불편이 없도록 진행할 것임을 통보)

연번	접수일	민원인	담당 부서	민원내용	진행결과
50.	2018.8.20.	김00	도시관리과	도로에 임의설치 된 주차금지 표지 처리요청	답변완료 (주차금지 표지를 철거하도록 1차 경고장 부착하고 조치 사실을 민원인에게 통보함)
51.	2018.8.20.	심00	건설과	도로보수 요청	답변완료 (예산확보 후 도로포장을 신속히 진행할 예정임을 통보)
52.	2018.8.21.	박00	환경보전과	악취포집에 대한 자료공개 요청	답변완료 (악취포집 자료공개 통지)
53.	2018.8.26.	이00	도시관리과	학원 앞 불법구조물 단속요청	답변완료 (구조물의 위치가 개인 사유지 내에 존재하여 단속이 불가하고 도로상에 설치된 주차금지시설은 정비하였음을 통보)
54.	2018.8.30.	이00	교통정책과	인도에 주차된 차량 단속요청	답변완료 (학익1동 주민센터와 협의 하여 해당지역에 주정차하지 못하도록 안전펜스 설치하였음을 통보)
55.	2018.10.3.	박00	건설과	주차금지 설치봉 추가 설치	답변완료 (12월 중2개 설치 예정임을 통보)
56.	2018.10.5.	박00	교통정책과	주안역 부근 학원 차량 불법 주정차 단속	답변완료 (차량소유주에게 계도하고 민원인에게 교통불편 신고방법 안내)
57.	2018.10.15.	임00	교통정책과	주차장 출입구 불법 주정차 단속	답변완료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가능여부를 미추홀경찰서에 문의 하고 해당도로가 소방차 진입로이며 도색할 예정임을 통보)
58.	2018.10.16.	권00	인천도사공사	화동근린공원 화장실 개방 요구	답변완료 (미추홀 구청에 공공시설 인계인수 예정일인 2018년 12월 말에 개방예정임을 통보)
59.	2018.10.22.	변00	자원순환과	재활용쓰레기 수거후 관리 상태	답변완료 (현장조치와 함께 수거차량 업체에 직원교육을 실시 하도록 당부하였음을 통보)

연번	접수일	민원인	담당 부서	민원내용	진행결과
60.	2018.10.29.	이00	도시관리과	학원 앞 불법구조물 단속요청	답변완료 (구조물의 위치가 개인 사유지 내에 존재하여 단속이 불가하고 도로상에 설치된 주차금지시설은 정비하였음을 통보)
61.	2018.11.15.	김00	감사실	전기요금 과다납부	각하 (우리 구 소관 사항이 아니므로 처리할 수 없음을 안내함)
62.	2018.12.04.	유00	건축과	주택 대문 앞 주차장 출입구 공사에 대한 민원	답변완료 (건축관계자에게 민원인의 피해 상황을 전달하고 원만한 해결을 권고하였으며 범상 분쟁 해결제도 안내)
63.	2018.12.14.	신00	건축과	상가 통행로에 가스 및 하수 배관이 설치되어 불편 야기	답변완료 (해당 건물은 공동주택 관리법에 의해 관리되는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체적 관리 대상임을 안내함)
64.	2018.12.18.	김00	교통 정책과	골목길 반사경 설치 요청	답변완료 (2019년 1월중에 반사경 설치 예정임을 안내)
65.	2018.12.26.	김00	자동차 관리과	아파트 인근도로 밤샘주차 단속 요청	답변완료 (민원인 설득 종결함)
66.	2018.12.31.	천00	건축과	송의동 집합건축물 하자보수	답변완료 (건축설계자에게 민원사항의 해결을 위해 공문으로 협조요청한 사실과 국토교통부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 이용방법 안내)

제 5 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옴부즈만 고충민원 주요 처리사례

1. 지구단위계획(수봉지구)에 따른 재산권 침해 검토요청 민원 43
2. 학익동 성당 도로점용료 부과 관련 민원 47
3. 주안 고운누리아파트 인접 신축공사 피해보상 민원 52
4. 주안동 담장균열 원상복구 요구 민원 55
5. (주)DCRE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관련 민원 58
6. 관교동 공영주차장 신축공사 피해방지 조치 요구 60
7. 공원시설 내 불법 설치된 컨테이너 박스 철거 요구 65
8. 의무보험 미 가입 차량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민원 69
9. 골목도로 포장요구 거부처분 불복 민원 73
10. 주안1구역 재개발 민원 법적 쟁점 검토 요청 76
11. 영업장 무단확장 시정명령 사전통지에 대한 불복민원 78

제5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옴부즈만 고충민원 주요 처리사례

1. 지구단위계획(수봉지구)에 따른 재산권 침해 검토요청 민원

주관 옴부즈만	지구단위 계획에 따른 재산권 침해 검토 요청
김 태 웅	

① 민원 개요

□ 민원인 : 심○○

□ 민원요지 : 민원인의 거주지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수봉지구)으로 지정되어 건축물 신축 등의 개발행위를 함에 따라 해당 개발행위의 전제요건 충족 조건이 개인의 재산권 침해에 해당하므로 해결 방안을 검토하여 줄 것을 요구함.

② 조사내용

□ 청구인주장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있어 민원인의 필지는 ‘공동개발 지정’ 지역으로 편성되어 있어 단독적인 개발행위가 불가하고 ‘공동개발 지정’으로 묶인 다른 필지의 소유자는 해외에 거주 하여 연락이 불가능한 상태여서 민원인의 필지는 단독적으로 개발이 불가한 상태이므로 재산권의 행사와 관련하여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재산권의 침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검토하여 줄 것을 요구함.

□ 사실관계

가. 해당 지역은 2007.07.23 수봉공원 주변지역인 도화동 등 고도규제, 기반시설 정비 등을 통해 주거환경 및 자연환경의 계획적 관리를 유도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제51조에 의거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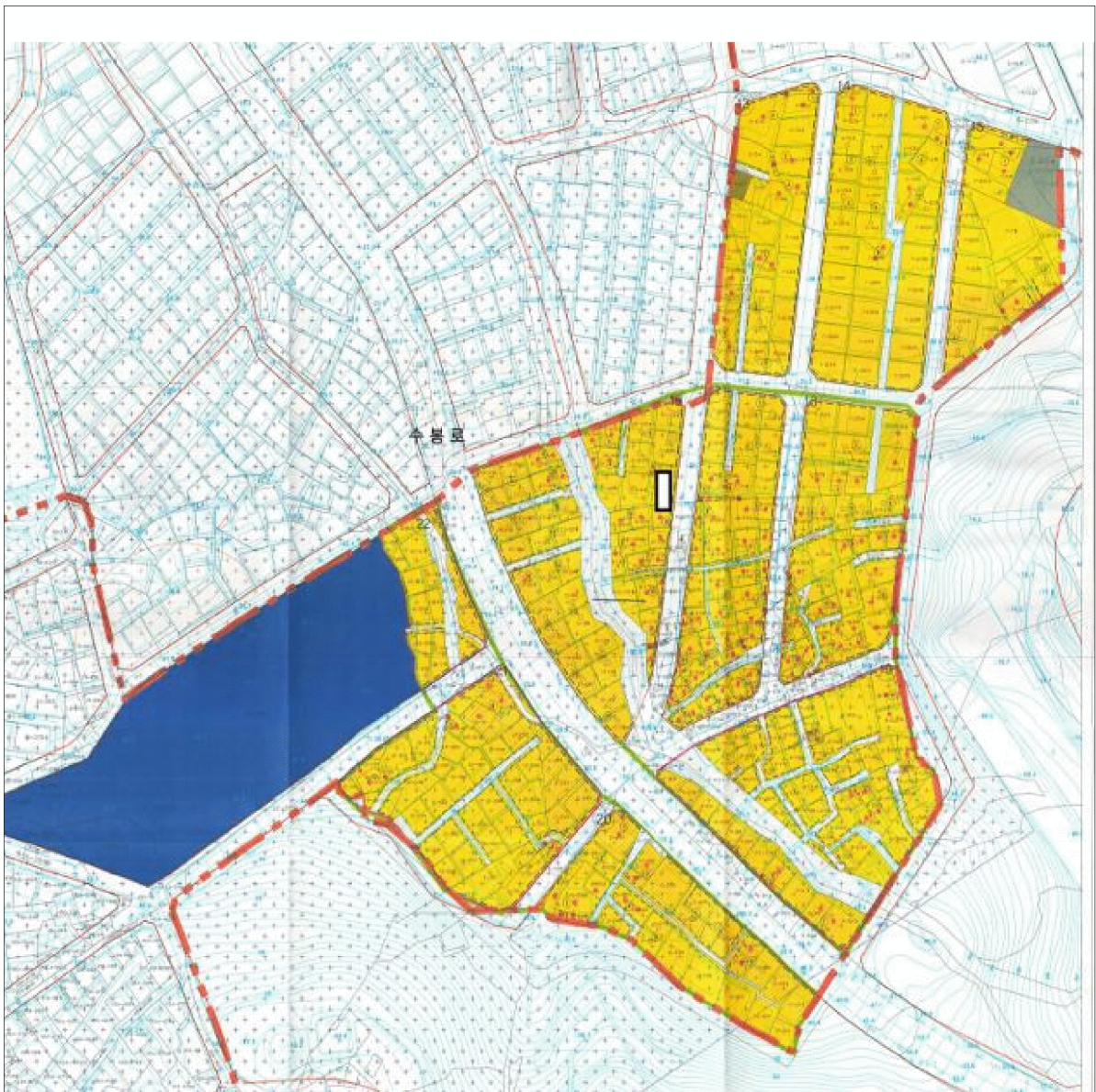
나. 또한, 해당 구역에서 민원인이 소유한 토지는 접근로가 없거나 접근성이 극히 불량한 필지(송의동 7-37, 10㎡)와 공동개발 지정 지역으로 묶여있는 관계로 민원인이 소유한 필지(송의동 7-36, 182㎡)는 7-37 필지와 공동 개발을 통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음. 이를 위해서는 7-37 필지를 매입하거나 공동으로 개발을 진행하여야 함.

□ 제한요건

가. 민원인이 소유한 필지와 ‘공동개발 지정’으로 지정된 7-37 필지의 소유자는 장순경 (171107-1149314)으로 현재 주민등록 상 해외 이주자에 해당하여 연락이 두절된 상태임.

나. 이로 인하여 민원인이 소유한 필지 송의동 7-36 (182㎡)의 건축행위를 위해서는 송의동 7-37 (10㎡)의 소유자로부터 해당 토지를 매입하여 개발하거나 동의하여 공동개발을 하여야 하나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이고 단독 개발행위에 대한 서면 동의조차 어려운 상태임.

다. 해당 필지의 도면상 위치



※ 위치 상세도면



[3] 조사결과

□ 판단

가. 공동개발 지정인 상태로 개발행위의 가능 여부

위에서 언급한 대로 7-37번지의 토지 소유자의 소재지나 연락처를 알 수 없어 동의를 얻을 수 없으므로 현실적인 해결 방안이 될 수 없음.

나. ‘공동개발 지정’ 지역을 ‘공동개발 권장’ 지역으로 변경

공동개발을 권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5항,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4항 제3호 및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16조에 의한 경미한 변경사항에 해당되므로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에 따라 공동개발로 지정된 인접지 대상 토지면적의 2/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충족되는 경우 가능할 것임.

□ 결 론

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동개발 지정을 권장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공동개발로 지정된 인접지 대상 토지 면적의 2/3의 동의를 구하여야 함.

※ 도시창생과 유권해석

민원인 소유의 토지인 7-36외 7-182, 7-143의 토지 소유자 중 7-182의 토지소유자로부터의 동의를 구하는 경우 인접지 대상 토지 면적의 2/3의 동의를 얻었다고 볼 수 있어 공동개발 지정을 권장으로 변경할 수 있음.

나. 이에 따라 민원인에게 7-182의 토지소유자로부터의 개발행위와 관련한 동의를 구하여 쟁점 토지를 공동개발 권장으로 변경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고 이에 동의하여 민원인의 노력으로 7-182의 토지소유자로부터의 동의를 구하여 해당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답변함.

다. 관련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

- ⑤ 결정된 도시·군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 ④지구단위계획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제30조제5항 단서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지방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제2항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제1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3. 획지면적의 30퍼센트 이내의 변경인 경우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16조 (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

지구단위계획중 영 제25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건축위원회와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2. 학익동 성당 도로점용료 부과 관련 민원

주관 ombudsman	학익동 성당 도로 점용료와 사유지 공공사용에 따른 정당 보상간의
김 태 응	형평성 요구

① 민원개요

□ 민원인 : 김○○

□ 민원요지: 학익동 성당의 정문 출입을 위한 도로점용에 점용료가 부과된 상황에서 후문의 성당 부지 일정 부분(약37제곱미터)이 정당한 보상없이 인근 공용 주차장의 이용을 위해 사용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상계를 통한 이의 조정을 요구함.

② 사실관계 및 민원인의 요구사항

□ 사실관계

가. 2018.03.31.자를 날기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은 학익동 성당 출입구 용도의 도로 사용과 관련하여 도로점용료를 부과함.

나. 2018.03.14 학익동 성당 사무장은 해당 도로점용료의 부과 사실 자체는 인정하나 학익동 성당 부지 중 학익동 518-4 토지와 학익동 512-3 토지의 도로사용과 관련하여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사유지에 대한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은 채 도로 점용료 부과는 부당하다는 민원을 제기함.

다. 학익동 518-4에 인접한 토지는 쟁점 부동산 건너편 공용주차장 설치로 인하여 공용주차장의 진출입로로 이용되고 있음을 현장에서 확인하였으며 학익동 512-3 토지 중 일부는 무단으로 도로로 포장되어 주민들의 주차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었음.

□ 민원인의 요구사항

쟁점 부동산 2필지의 공용목적의 토지 사용과 관련하여 관할 구청은 사유지가 공용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을 파악하여 기 부과된 도로 점용료를 상계 내지 감액시켜 줄 수 있는지 검토를 요구하고 있음.

③ 조사경위

□ 민원접수 및 조사경위

- 가. 2018.03.14 (수) 학익동 성당의 요청으로 학익동 성당에 방문하여 해당 민원을 접수
- 나. 2018.03.19. (월) 남구청장 주재로 도시관리과, 교통정책과, 건설과, 학익동장 등
민원관련 부서 담당자 및 부서장과 관련 민원 회의 진행
- 다. 2018.03.21 (수) 건설과 담당자와 부서장으로부터 해당 민원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
- 라. 2018.03.28 (수) 교통정책과 담당자 및 부서장으로부터 민원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
- 마. 2018.03.31 (금) 해당 민원과 관련하여 구청장 구두 보고 및 민원인 안내
- 바. 2018.04.02 (화) 학익동 성당 방문 후 민원 관련 최종 협의

④ 조사결과 및 사항별 판단

□ 도로 점용료 부과 관련

- 1) 관련부서 : 도시관리과
- 2) 관련부서의 의견

2018년 3월 31일을 납기로 해당 민원과 관련하여 남구청에서 부과한 도로점용료는 [도로법 66조 및 68조]에 의한 감면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3) 옴부즈만 의견

관련 부서인 도시관리과의 입장대로 학익동 성당 측에 부과된 도로점용료는 현행 도로법 상의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사안이 아니므로 해당 민원의 해결 방안을 도로 점용료의 면제의 방법으로 접근할 수 없고 민원인이 제기하는 사유지의 공적 이용에 따른 사용료를 지급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할 것임.

□ 학익동 518-4 번지 도로 사용과 관련한 이용료 산정

- 1) 관련부서 : 건설과
- 2) 관련부서 의견

관련부서인 건설과는 민원인의 토지인 학익동 518-4번지의 도로 사용의 경우 해당 도로가 도시계획법 상 도로가 아닌 관습법 상 도로에 해당하여 해당 도로 사용료를 지자체에서 부담할 법적 근거가 없음을 주장

- 3) 옴부즈만 의견

학익동 성당 소유지인 학익동 518-4의 일부가 도로로 사용되고 있음은 사실이나 해당 도로는 도시계획법 상 도로가 아닌 관습법 상 도로에 해당하여 건설과의 주장대로 지자체에서 해당 면적에 대한 사용료를 대납할 법적 근거는 없는 것으로 확인함.

□ 인접 공용주차장의 활용을 위한 사유지(학익동 518-4)임차방안

1) 관련부서 : 교통정책과

2) 관련부서 의견

학익동 518-4의 도로 이용 부분을 사유화 할 경우 공용주차장 시설을 후퇴하여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현실에서 해당 도로 이용 부분을 임대차 계약을 통하여 이용할 필요성이 없다는 의견을 개진함.

3) 옴부즈만의 의견

민원인이 종교단체라는 특수성을 고려할 때 관습상의 도로로 이용되는 학익동 518-4를 배타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은 현실적이지 않다는 점과 설혹 배타적 사용이 실현되어 공용주차장의 사용에 막대한 지장을 준다면 공용주차장 시설을 후퇴하여 공간을 확보할 수 있음을 현장에서 확인한 바 이를 강제할 명분은 없음.

□ 학익동 518-4 토지와 관련한 건축법 상 제한 요건

1) 관련부서 : 건축과

2) 건축과 의견

학익동 518-4 토지는 1990년 사용승인을 받던 해에 적용된 건축법 시행령 제63조 ①항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의 대지는 폭 6미터이상의 도로 또는 광장에 6미터 이상을 접하거나 4미터 이상을 2곳 이상 접하여야 한다. 다만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읍의 구역에서는 폭4미터 이상인 도로에 4미터 이상을 접하여야 한다.’ 규정에 의하여 518-4번지의 토지가 이에 해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해당 부지의 도로사용은 건축허가를 위한 의무조건임을 확인 함 .

3) 옴부즈만의 의견

건축허가의 경우 행위시법 원칙에 따라 해당 행위가 있었던 당시의 규정이 적용 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소급적용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한 현행법이 소급 적용될 수는 없으므로 해당 도로는 건축허가의 의무조건으로 확인됨.

다만, 도로로 이용되는 해당 토지를 정확히 실측하여 건축법을 충족시키는 도로 이용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로 이를 위한 측량비용과 초과부분에 대한 사용료의 부담 주체를 결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임을 인식함

⑤ 조치결과 (수용)

학익동 성당측에 당해 토지의 도로 사용은 건축허가 당시 건축법상의 의무사항으로 사용료를 발생시킬 수 없으므로 부과된 도로점용료가 형평에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님을 이해시켜 민원인 측에서 이를 수용함.

※ 현장 사진



점용료 부과 대상 성당 정문 출입로



성당 후문 인접 주차장

※ 관련법령

【도로법】

제66조(점용료의 징수 등)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68조(점용료 징수의 제한)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의 목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2. 재해,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도로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3.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위한 경우
4.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 4의2. 「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주거의 형태에 한정한다)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5.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6. 통행자 안전과 가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지상에 설치된 시설물을 지하로 이동 설치하는 경우
7.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 중 출입구에 이르는 접근로 또는 출입구와의 높이 차이를 제거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8. 사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자가 그 부지를 제61조제1항에 따라 점용허가받은 경우
9.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또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건축법】

제27조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②제7조의 2에 규정된 건축물의 대지 또는 차고의 대지가 인접하는 도로의 폭, 그 대지가 도로에 접하는 부분의 길이 기타 그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건축법 시행령

제63조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①법 제27조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는 폭6미터 이상의 도로 또는 광장에 6미터 이상을 접하거나 4미터 이상을 2곳이상 접하여야 한다. 다만,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읍의 구역에서는 폭4미터 이상인 도로에 4미터 이상을 접하여야 한다.

3.주안 고운누리 아파트 인접 신축공사 피해보상 민원

① 민원개요

주관 ombudsman	주안동 소재 대산고운누리 아파트 인근의 오피스텔 신축공사로
김태웅	인해 아파트에 발생한 피해의 조치방안에 대한 이견조정 요청

□ 민원인 : 차 ○○(입주민피해배상대책위원장)외 다수

□ 민원요지

주안동15-40 외 1필지에 신축중인 오피스텔 공사로 인해 인접한 대산 고운누리 아파트의 담장이 파손되고 정화조 균열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조치방안을 요구하였으나 시공사 측과 아파트 측의 의견차가 커서 구청이 개입하여 중재하여 줄 것을 요청.

□ 민원진행사항

- 가. 2017. 09. 28. : 건축허가 접수
- 나. 2017. 11. 02 ~ 28. : 건축허가 관련 민원회의 개최(1, 2, 3차)
- 다. 2017. 12. 04. : 당사자간 건축현장에서 면담개최
- 라. 2017. 12. 15. : 건축허가 처리
- 마. 2018. 01. 04. : 착공신고 처리
- 바. 2018. 01. 15. : 대산고운누리 아파트 측 지반균열발생 현장확인
- 사. 2018. 01. 26. : 지반침하 관련 민원회의 개최
- 아. 2018. 02. 27. : 지반침하로 인한 담장파손 및 정화조 균열 발생
- 자. 2018. 03. 12. : 보수·보강 일정회의(아파트 측 요청으로 회의취소)
- 차. 2018. 04. 25. : ombudsman 민원중재요청 접수
- 카. 2018. 04. 26. ~ 27. : 공사현장회의 - 현장소장, 민원대표, 건축과
- 타. 2018. 04. 27. : ombudsman 현장방문조사
- 파. 2018. 04. 30. : ombudsman 제1차 민원중재

② 중재내용

□ 고운누리 의견

선 피해보상 금액 합의 후 복구공사 진행 할 것을 요구

□ 시공사 측 의견

공사로 인해 발생한 담장 파손 및 정화조 균열을 먼저 보수·보강 후 시간을 가지고
피해보상을 협의 할 것을 주장

□ 옴부즈만 중재 내용

가. 1차 중재를 통해 양측의 입장 차가 확인되었고 그 차이가 조정이 불가능 할 정도로 첨예한 사안이 아니므로 각자 양보할 수 있는 부분을 논의 후 2차 중재로 나온다면 차후 수차례 중재의 장에서 타결이 이루어 질 것으로 생각함.

나. 만약 중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인간의 분쟁에 행정기관이 개입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소송을 통해 해결될 문제이기는 하지만 이 경우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가급적 중재를 통해 상호양보를 이끌어 내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임.

③ 옴부즈만 의견

가. 현행의 공·사법 이분체계에서 사인간의 분쟁에 행정기관의 개입은 자칫 민원을 확대시키거나 다른 형태의 민원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어 개입에 한계가 존재함. 그러나 민간인의 신분으로서 행하는 옴부즈만의 중재기능은 공사법 체계에 혼란을 초래 하지 않으면서도 구의 독립된 기관으로서 공신력을 담보할 수 있어 향후 사인간의 분쟁에 바람직한 역할이 가능함.

나. 본 사안에서도 분쟁당사자들은 옴부즈만의 1차와 2차에 걸친 중재 역할을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 이건의 폭을 좁혔고 이를 토대로 자발적인 협상에 임해 분쟁을 해결하는 양상을 보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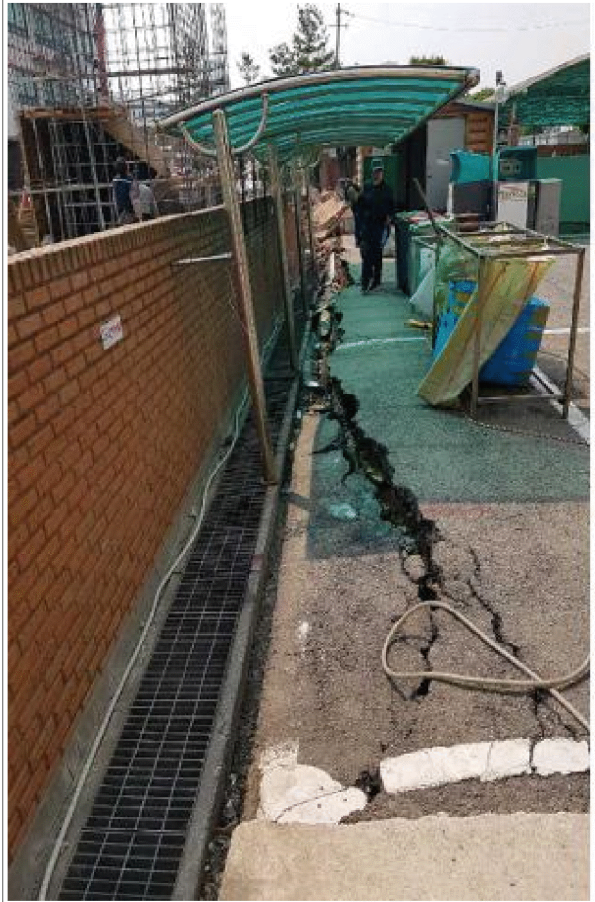
다. 따라서 사인간의 분쟁에서 시간과 비용의 과다한 부담을 안게 하는 소송을 통한 해결은 최종적이고 보충적인 수단으로 유보하고 옴부즈만의 중재 역할을 선행적으로 심분 활용할 것을 권고함.

라. 향후 옴부즈만의 이러한 중재 역할이 소송에 앞선 분쟁 해결수단으로 널리 인식되고 확립된다면 사회경제적인 비용의 절감은 물론 지역공동체의 내적 갈등을 완화하는데 작지 않은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 함.

※민원현장



담장 붕괴



바닥 균열

4. 주안동 담장균열 원상복구 요구 민원

① 민원 개요

주관옴부즈만	주안동 1588-13번지 상 인접대지 경계선 상의 담장균열 원상복구
김 태 웅	요구

□ 민원인 : 박 ○○

□ 민원요지

민원인 소유 건물 인접대지의 담장 균열은 인접대지상의 가설건축물로 인해 비롯된 것으로 가설건축물의 설치허가권자인 남구청이 이를 원상 복구할 것을 요구

□ 민원접수 및 진행

- 가. 2018.05.16 (수) 남구청장 주제로 민원인, 건축과 담당자 및 팀장, 옴부즈만 참석
- 나. 2018.05.16 (수) 건축과 담당자에게 해당 민원과 관련한 자료 요구
- 다. 2018.05.24 (목) 건축과 담당자와 팀장으로부터 해당 민원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요구한 자료 수령
- 라. 2018.05.24 (목) 해당 민원 발생 지역 현장 답사 및 토지 소유자 면담
- 마. 2018.05.24 (목) 민원 결과 통보

② 민원내용 및 사실관계

□ 민원내용

2018년 5월 민원인 소유 건물 인접대지의 담장의 균열이 2010년 당시 인접대지의 임대로 인한 것으로 인접대지의 임대 원인을 제공한 가설 건축물의 허가권자인 남구청이 이를 원상 복구해야 할 책임이 있으니 이를 해결하라는 민원

□ 사실관계

- 가. 2010년 6월 21일 인천광역시 남구청장은 (주)현대건설이 제출한 가설건축물축조 신고와 관련한 신고필증을 교부함.

나. 당시 가설건축물 신고허가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해당 허가와 관련한 위법사항은 없어 보임.

다. 2010년 당시 해당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허가와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한 관계로 2010년 6월 17일 건축복합민원일괄협의회가 환경보전과 주재로 개최되었으며 회의 결과 [대기 환경보전법]에 따라 현재 해당 시설물은 신고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향후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자진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처벌과 관련한 안내와 환경오염 방지 시설 및 폐수배출시설 등을 마련할 것을 권고함.

라. 이후 해당 시설은 지속적인 민원으로 인하여 철수 및 이동되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민원인은 해당 가설 건축물의 허가에 문제가 있어 철수한 것이라 주장하나 구청의 입장은 가설 건축물 허가 자체에 문제가 있어 철수한 것이 아니라 민원으로 인하여 공사 시행사인 (주)현대건설에서 자진 철수한 것으로 주장함.

마. 허가의 적법함 또는 위법함과 관련한 사실관계 여부는 현재 해당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임.

③ 민원조사 및 결과통보

□ 현장조사

가. 현장에서의 민원과 관련한 담장의 상태는 균열과 기울어짐으로 인한 보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나 그 원인과 관련하여 노후에 의한 균열과 기울어짐인지 민원인이 제기한 공사로 인한 균열과 기울어짐인지에 대해서는 현재 확인할 방법이 없었음.

나. 토지 소유주와의 면담을 통해서 토지 소유주는 인근 대지의 소유주와의 다툼을 원치 않으며 해당 토지 관리인으로 하여금 해결 방안을 마련해 볼 것을 2018년 초 민원인에게 언급한 사실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주었으며 옴부즈만 면담 시 토지 관리인에게 해당 담장을 원상 복구하여 줄 것을 유선상으로 통보하였으며 이와 관련한 공사 비용을 부담하기로 함.

□ 결과통보

가설건축물 소재 토지 소유자의 비용부담으로 민원인의 담장을 원상회복 해 주겠다는 의사 전달하여 민원종결 처리함.

※현장 사진 및 위치도



5.(주)DCRE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관련 민원

① 민원개요

주관 옴부즈만	동양화학 공장의 철거에 따라 발생하는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강 원 구	시 우려되는 소음과 비산먼지에 대한 대책 강구 요구

□ 민원인 : 김 ○○

□ 민원요지

(주)DCRE의 공장 철거로 인해 발생하는 산업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건립으로 주민들에게 비산먼지와 소음 등의 피해가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줄 것을 요구함.

② 진행상황 및 부서의견

□ 진행 상황

가. 2018. 7. 18. : DCRE 민원 옴부즈만 접수

나. 2018. 7. 23. : 조사위원 배정

다. 2018. 7. 30. : 민원관련 회의 개최(김진구 구의원, 자원순환과 산업폐기물 팀, 옴부즈만)

□ 회의 참석자 의견

가. 김진구 구의원 : 언론에서 문제를 제기한 대로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운영 시 발생하는 분진(비산먼지) 및 소음으로 주변 주민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이로 인한 집단 민원 발생가능성이 있으므로 구의 관련부서는 시설승인을 신중히 함과 동시에 시설승인 시 소음 및 비산먼지 대책을 철저히 해줄 것을 요구함.

나. 산업폐기물 팀장 :

○ 아직 시설승인에 대한 정식 민원접수 전이나 사전협의를 있었고 현재 관련 부서와 타법 저촉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음.

-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법으로 폐콘크리트 등 건설폐기물 재활용은 정부가 권장하고 있는 사업임.
- 해당 부서에서는 소음이나 분진 방지조치 계획을 갖춘 시설 승인 요청이 있을 시 무턱대고 거부하면 행정소송이나 피해보상소송 등 새로운 민원이 예상되어 승인 시 주민피해 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
- 또한 10만톤의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업체에 반출하는 과정에서 대형 덤프트럭 등의 운행으로 발생하는 소음과 비산먼지 문제 또한 고려할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의견 제시
- 기타 주민설명회 사전개최 등의 의견이 있었으나 현재까지는 주변 민원인들의 거주지가 시설예정지로부터 수킬로미터 이격되어 있고 아직 민원인을 특정하기 어려운 상태라는 의견.

③ 옴부즈만 의견

가.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승인 시 비산먼지, 소음 등으로 인한 민원발생이 예상되므로 해당 부서에서는 시설승인 전에 이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시설계획을 확인하여야 함.

나. 소음의 경우 시설설치 및 운영 전에는 측정이 불가하다는 특수성이 있으므로 이후에 철저한 점검활동계획 수립이 필요함.

다.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에 비산먼지 저감시설 설치, 이동식 고압살수기 비치 등 사전 대책을 마련하도록 조치하는 것이 필요함.

라. 사전 주민설명회 등 적극적인 행정행위가 필요해 보이거나 구체적인 민원집단의 미형성인 관계로 향후 추이에 따른 대응이 필요함.

6. 관교동 공영주차장 신축공사 피해방지 조치 요구

① 민원개요

주관 옴부즈만	관교동 소재 공영주차장 신축과 관련하여 인접 대지 주택소유주가
김 태 웅	피해 방지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함

□ 민원인 : 김○○

□ 민원요지

관교동 486-6번지 외 2필지 공영주차장 신축과 관련하여 인접대지인 486-8번지 소재 주택 소유주가 피해방지조치의 차별적 시행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해당 공사로 인해 건물의 정화조가 파손되었음을 주장하며 민원제기

□ 민원진행상황

- 가. 2018.07.27 : 관교동 공영주차장 관련 민원 제기
- 나. 2018.08.01 : 옴부즈만실로 접수 및 교통정책과 담당자 면담
- 다. 2018.08.03 : 현장 방문 및 민원인 면담 후 건설관계자 면담

② 민원내용 및 사실 관계

□ 민원 내용

가. 관교동 486-6번지 외 2필지 공영주차장 신축과 관련하여 인접대지인 관교동 486-8 소재 주택 소유주가 공사로 인한 피해방지조치로 486-4번지에만 흙막이 설치를 하고 본인소유 지번에는 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 차별적 조치로 인해 본인소유 주택의 구조적 문제 발생가능성을 주장하며 시정조치를 요구함.

나. 또한 본인 건물이 정화조 파손이 해당 공사로 인한 것임을 주장하며 피해방지조치의 강화를 요구함.

□ 사실관계

가. 해당 공영주차장 신축과 관련하여 공영주차장 부지에 대한 지질조사를 실시하였음.

나. 해당 지질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민원인이 제기한 관교동 486-8번지와 인접한 지역을 시추(BH-3)을 통해 지질조사 한 결과 표층에 해당하는 점토질로 구성되어있는 성토층의 N치는 15/30에 해당하여 견고(Stiff)한 상태임을 보고하였음.

다. 해당 공영주차장 공사 감리자의 검토 의견서에 따르면 486-4번지의 토질은 매립토 및 연약지반으로 486-8번지의 점토질의 토지 구성과 상이하여 486-4번지는 흙막이 설치가 필요한 상태이나 486-8번지는 흙막이 설치가 필요하지 않은 상태임을 확인하고 있음.

라. 또한, 486-4번지에 설치한 흙막이 설치는 단순 흙막이 방지 구조물로 구조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시설이 아니어서 민원인이 주장하는대로 발생할지 모르는 민원인의 건축물의 구조적인 문제 발생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님.

마. 현장 공사 관계자로부터 2018.08.07일부터 공영주차장 인접대지인 486-4번지, 486-8 번지에 대한 철근콘크리트 옹벽공사가 실시될 것으로 보고 받음.

바. 해당 옹벽공사는 공영주차장과 인접 대지의 구조적인 문제 발생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시설에 해당하여 민원인지 제기하고 있는 민원에 대한 해결 방안이 될 것으로 판단함.

사. 또한, 민원인 건물의 정화조 파손은 감리자의 의견에 따르면 해당 공사와는 관련이 없음을 확인하고 있으나 시행사인 태화종합건설(주)의 토목 하도급업체 측에서 이미 정화조 배관 교체공사를 완료하였음을 현장에서 확인함.

아. 옹벽공사와는 별도로 민원인의 건축물의 출입구의 타일공사를 태화종합건설(주)측에서 보수하여 주기로 현장에서 확약함.

③ 조사결과

□ 현장조사 및 판단

- 가. 민원인이 제기하고 있는 대로 486-4번지와 486-8번지의 일부는 흙막이 설치가 완료되었으며 486-8번지의 일부는 흙시 모를 토사유출에 대비 하여 비닐로 상부를 덮어놓은 상태였음.
- 나. 486-4번지에 설치되어 있는 흙막이 설치도 단순 흙막이 설비에 불과하여 구조적인 내력벽이 아니라는 공사 관계자의 설명을 들음.
- 다. 2018.08.07부터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인 옹벽공사가 진행될 것이므로 현장방문일인 2018.08.03 에는 민원인이 요구하는 흙막이 설치의 필요 없을 것으로 판단되었음.
- 라. 민원인이 주장하는 정화조와 관련한 부분은 해당 공사와 관련없다는 감리자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현장 방문 당시 정화조 배관공사를 시공사에서 실시·완료한 상태였으나 민원인의 추가 불만이 발생하였고 이는 민원인과 시공사와의 협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옴부즈만 의견

- 가. 해당 공영주차장의 지질조사 보고서의 내용을 안내드리고 민원제기 후 감리자의 확인서에 대해 설명을 드렸으나 민원인은 현장 공사관계자들과 미추홀구청간의 관계에 대한 편파 적 생각을 갖고 있어 이를 설득하기 위해 노력하고 이를 설득함.
- 나. 민원인의 건물 출입구의 타일 보수 역시 옹벽공사와 마찬가지로 해당 시공업체에서 유지 보수해 주기로 현장에서 확인함.
- 다. 486-4번지의 흙막이 공사 당시 사전에 공사 관계자나 미추홀구청으로부터 486-8번지의 토질이 486-4번지와 달라 흙막이 공사가 필요 없음을 안내하였다면 이러한 민원을 최소화 시킬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
- 라. 따라서, 민원인의 입장에서 상대적인 차별을 받고 있다고 느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 안내를 통해 민원인의 이해를 구하고 설득시키는 면밀한 과정이 필요했을 것으로 보임.
- 마. 공사관계자에게 2018.08.07 옹벽공사 전까지 흙막이 설치가 안된 부분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공사관계자 역시 이를 인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와 신경을 쓰기로 답변함.

④ 해당부서 조치결과 (수용)

옴부즈만의 의견을 수용하여 추후 후속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와 후속조치를 수행하기로 함.

※ 현장사진



흙막이 부분 전경



민원제기 부분



당초 현황 전경



토사 함몰 해당부위

※ 관련 자료

감리자 검토 의견서

감리자 검토 의견서			
공사명	관교동 486-6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신축공사		
검토자	감리자 한 기 용	검토일	2018.07.31.
제목	관교동 공영주차장 흙막이 및 정화조관련 민원		
1. 흙막이 관련 토사유실 흙막이에 대하여 관교동 486-4경계선 토질은 매립토 및 연약지반으로 형성 관교동 486-8경계는 견고한 점토질로 건조상태에서 만저도 부서지지 않으며 찰흙 상태로 유지됨 토사의 유실을 방지코저 관교동486-4와 관교동 486-8 일부분만 흙막이설치를 하여도 타당함 2. 정화조 관련 정화조와 약1.5m 정도 인접하여 터파기가 된 상태이며 점토질지반으로 매우 단단합니다 정화조 파손에 대하여는 민원인 부실공사가 원인입니다 정화조 토출구에 오수라인이 연결되어야 원칙이며 민원인의 정화조는 임의로 토출구를 만들어서 여기서 유출된 오수가 오랜시간 지반으로 유입된 상태로 유지되고 있어서 민원인과 합의하에 오수라인 및 토출구 부분을 민원인 입해하에 재시공 한 상태로 정화조 관련 민원은 주차장 공사와 무관하다고 사료됨 3. 민원관련 사진 일체 성 진 건 축 사 사 무 소 건축사 한 기 용 인			

7. 공원시설 내 불법 설치된 컨테이너 박스 철거 요구

① 민원개요

주관 옴부즈만	30 여 년간 공원 내에 불법 설치되어 관변단체 사무실로 사용해온 컨테이너 박스의 철거 요구
김 태 응	

□ 민원인 : 김○○

□ 민원요지

30여년 동안 송의동 33-17 소재 공원시설 내에 설치되어 관변단체 사무실로 사용해온 컨테이너 박스를 무허가 시설물이라 주장하며 철거할 것을 요구함.

② 조사내용

□ 민원접수 및 진행사항

가. 2018. 08. 13. : 건축과 민원접수

나. 2018. 08. 22. : 옴부즈만실 민원 이관 및 건축과 담당자 면담, 공원소재 동장 면담.

다. 2018. 08. 29. : 민원 대상 컨테이너 박스 사용자 (새마을 부녀회장 및 협의회장) 면담.

□ 사실관계

가. 현재 송의4동 33-17에 놓여있는 컨테이너가 공원시설에 위치한 무허가 건축물에 해당하여 이를 철거해 달라는 민원이 접수됨.

나. 해당 불법 컨테이너는 현 주소지에서 1986년부터 새마을 협의회 및 새마을 부녀회의 사무실로 사용해왔음.

다. 1986년 당시의 설치 근거는 확인할 수는 없으나 현재 공유재산법이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해당 시설물은 공원시설 내 설치 불가한 시설물에 해당함.

라. 해당 부지는 인천시 행정재산이며 일반적인 행정재산을 사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사용, 수익허가를 받아 대부료를 부담한 후 사용해야 함.

마. 다만, 해당부지(숭의4동 33-17)는 인천시 행정재산에 속하는 공원부지로서 본 사안의 컨테이너 시설물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에 의하여 공원부지에 설치가 불가능한 시설물에 해당하여 사용, 수익허가가 불가능한 상태임.

□ 관련 부서 의견

가. 건축과에서는 민원인과의 대화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여 민원인을 이해 설득하는 것을 해결방안으로 제시함.

나. 숭의4동에서는 대체 부지로 1필지를 제안하였으나 새마을 관련 단체에서 제안한 부지에서는 해당 사업을 할 수 없다고 통보해와 도울 방법이 마땅치 않음을 확인하였으며 숭의4동에 있는 공가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공가를 담당하는 담당부서에서 법률적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함.

□ 새마을 협의회 및 새마을 부녀회 입장

가. 숭의 4동에서 제시한 대체 부지는 수도시설과 화장실 시설 및 부지 위치가 적합하지 않아 목적사업을 이행하는데 불가능함을 토로함.

나. 공가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임대차 계약 보장 기간이 2~3년으로는 수용할 수 없음을 확인함.

다. 해당 부지가 아닌 미추홀구 소유의 적정한 부지에 대하여 대부료를 부담하고서라도 목적사업을 유지하고 싶다는 의견을 피력

③ 조사결과

□ 판 단

가. 해당 민원과 관련한 컨테이너는 현재 부지에서의 사용수익허가가 불가능한 상태로 민원인의 민원제기는 법률적 테두리 내에서 적합한 민원이라 판단됨.

나. 다만, 1986년부터 지역 봉사를 목적사업으로 한 새마을협의회 및 부녀회의 활동 취지를 고려할 때, 미추홀구 소유의 적합한 부지를 해당 단체에 사용수익허가를 하여 적정한 대부료를 받아 적법한 절차대로 임차계약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다. 이를 위하여 미추홀구 재산회계과에서는 대체할 수 있는 대체부지 존재 유무를 검토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라. 해당 단체와 관련한 본 민원을 해결함에 있어 해당 단체의 편의를 제공하는 측면으로 비추어진다면 다른 단체들과의 형평성이라는 문제에 있어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충분할 것으로 보여 신중히 해결해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됨.

④ 해당부서 조치결과 (불수용)

구청장에게 상기 판단 사항을 토대로 대체부지를 선정하여 임대하는 방안을 권고하였으나 당해 권고사항을 보충적 방안으로 보류하고 민원인을 이해 설득하여 해결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여 다른 방안을 강구할 것을 인권센터에 지시함.

□ 위 치 도



□ 현장 사진



※ 관련 법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도시공원의 점용허가) ③ 제1항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아 도시공원을 점용할 수 있는 대상 및 점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대상)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8.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시설로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이 경우 하나의 도시공원에 5개 이내의 시설로 한정한다.
 - 가. 도시공원의 기능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공원이용객에게 불편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설일 것
 - 나. 법 제15조제1항제3호사목에 따른 도시공원에 설치하는 시설일 것
 -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일 것
 - 라. 개별 시설의 건축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시설일 것

8. 의무보험 미 가입 차량 과태료 부과 처분에 대한 불복 민원

① 민원요지

주관 옴부즈만	구속수감으로 발생한 자동차의무보험 미 가입 기간에 대한 과태
김 태 응	료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민원제기

② 조사내용

□ 민원접수 및 진행상황

- 가. 2018. 08. 31. : 과태료 부과에 대한 민원제기 및 구청장 면담 신청
- 나. 2018. 09. 06. : 구청장으로부터 옴부즈만에게 민원해결 의뢰
- 다. 2018. 09. 12. : 옴부즈만실에서 차량과태료 부과팀과 민원인 면담

□ 피신청인의 주장

- 가. 과태료 부과대상자인 민원인의 아들은 2017. 12. 06. 구속 수감되어 2018. 06. 21. 에 가석방 출소되었음.
- 나. 민원인의 보험 만료일인 2018. 5. 26. 이후 3회(6.12./ 7.13./ 8.16.)에 걸쳐 의무보험 가입 촉구서가 발송되었고 민원인은 2018. 8. 17.에 의무보험에 가입함.
- 다. 이에 따라 의무보험 미 가입 기간(2018. 5. 27. ~ 2018. 8. 16.)인 총 82 일에 대하여 447,000원의 과태료가 부과 됨.
- 라. 민원인은 3차에 걸쳐 발송된 가입촉구서에 대해 수령받은 바 없음과 과태료 부과대상자인 아들의 수감기간이 과태료 부과기간에 포함된 것이 불합리 하다고 주장하며 민원제기함.

□ 사실관계

- 가. 자동차소유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 제5조(보험 등 가입 의무)에 따라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를 가입할 의무가 있으며,
- 나. 예외적으로 가입의무가 면제되기 위해서는 자배법 제5조의2(보험 등의 가입 의무 면제)에 따라 자동차등록증 및 번호판을 관할 구청에 반납한 후 면제 신청을 하여야 함.

- 다. 과태료 부과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20 조(이의제기) 및 제 21조(법원통보)에 따라 과태료 부과통지일로 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 라. 행정청은 14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 과태료 재판을 받아 과태료 금액을 결정 부과하도록 되어 있음.

③ 조사결과

□ 판 단

- 가. 민원인은 자동차 소유자인 자가 2017. 12. 6. ~2018. 6. 21.까지 교도소에 수감되었고, 수감 중인 2018. 5. 26. 보험기간이 만료하여 의무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상황이었으므로 자배법 제5조제2의 가입의무 면제 절차를 따르지 않았어도 면제되어야 함에도 구청이 이를 고려하지 않고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미추홀 구청의 자의적 법해석에 기반한 처분이라고 주장함.
- 나. 옴부즈만은 과태료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하면 질서행위규제법 제20조와 21조에 따라 구의 과태료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고 사건은 법원으로 이송되어 비송사건으로 당부를 다룰 수 있음을 설명하였음.
- 다. 민원인은 옴부즈만이 설명한 이의신청 절차에 앞서 수감 중이라는 특수상황에서 발생한 의무보험 미가입이 과태료 부과에 적정요건인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견해를 들어보고 이의 제기를 하겠다고 우리 구에서 국토교통부에 질의해서 결과를 회신 받아 알려주기를 요구함.

□ 결 론 (시정권고)

민원인의 요구대로 국토교통부에 상기 사항을 질의하여 과태료 부과가 타당하다는 회신을 받아 이를 민원인에게 통보할 것을 의견으로 표명함.

④ 해당부서 조치결과 (수용)

국토교통부에 상기 사항을 질의하여 과태료 부과가 타당하다는 회신을 받아 이를 민원인에게 통보했고, 민원인은 국토교통부의 의견을 받아본 후 과태료부과의 타당성을 인정하고 이의제기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여 민원을 종결함.

※관련 법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 ①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이하 "책임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5조의2(보험 등의 가입 의무 면제) ① 자동차보유자는 보유한 자동차(제5조제3항 각 호의 자가 면허 등을 받은 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를 해외체류 등으로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장기간 운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의 등록업무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자동차의 등록업무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그 운행중지기간에 한하여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자동차보유자는 해당 자동차등록증 및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시·도지사에게 보관하여야 한다.

제48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5.27.>

1.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2(보험 등의 가입 의무 면제사유) 법 제5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외근무 또는 해외유학 등의 사유로 국외에 체류하게 되는 경우
2. 질병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자동차 운전이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인정하는 경우
3. 현역(상근예비역은 제외한다)으로 입영하거나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감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이의제기) ①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 ③ 당사자는 행정청으로부터 제21조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행정청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철회할 수 있다.

제21조(법원への 통보) ① 제20조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과태료 부과금액]

의무보험 미가입기간	비사업용자동차	
	대인1	대물
10일이내	10,000	5,000
10일초과시 매1일마다	4,000	2,000
최고한도액	600,000	300,000
과태료합계	900,000	
최대금액 (중가산금 75%포함)	1,575,000	

9. 골목도로 포장 요구 거부처분 불복 민원

① 민원요지

주관 옴부즈만	훼손상태가 심각한 골목도로의 포장을 미추홀구에 요구하였으나
김 태 응	이를 거부하자 민원을 제기함

② 조사내용

□ 민원접수 및 진행상황

- 가. 2018. 10. 24. : 옴부즈만 실 민원접수
- 나. 2018. 11. 07. : 부서담당자와 면담 실시 및 법령 검토
- 다. 2018. 11. 14. : 부서 팀장과 면담 실시 및 의견표명

□ 신청 취지

민원인 주소지(미추홀구 수봉로 67번길 13-6) 앞 골목도로의 포장상태가 불량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구청에 포장을 요청하였으나 담당부서에서 해당도로가 사유지임을 이유로 소유자의 동의 없이 포장이 불가함을 통보하자 민원을 제기함.

□ 신청인의 주요 주장내용

- 가. 수봉로 67번길 13-36 도로 포장상태 불량으로 인근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고 미관 상으로도 개선의 필요성이 매우 크므로 골목도로의 포장을 구청에 의뢰하였으나 해당 도로는 사유지라는 이유로 구청 임의로 포장을 할 수 없고 해당 도로 소유자의 동의를 구해야 포장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통보해옴.
- 나. 해당도로가 사유지임을 이유로 들어 민원인에게 소유자의 동의를 구해오도록 종용하고 이 조건의 성취 없이 어떠한 행정절차도 진행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소극행정이므로 현대 행정의 정신에 반하는 처분이니 이를 시정한 적극행정을 요구함.

□ 사실관계

- 가. 해당 도로는 사유지임이 확인되며 등기부등본 상 소유자의 주소지는 표기되어 있음
- 나. 해당 도로는 30년 이상 소유자 변동 없이 도로로 사용되어 왔으며 도로사용과 관련하여 소유자의 어떠한 요구나 민원도 발생하지 않았음.
- 다. 민원인은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의 주소지를 알 수도 없는 상황이고 인근 지역에 거주하고 있지 않기에 민원인의 입장에서 도로 포장과 관련한 동의를 소유자에게 구하기는 사실 상 어려운 상황임.

③ 조사결과

□ 판 단

해당 도로는 사유지인 관계로 도로 포장시 소유자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선행절차로 지켜져야 하나 30년 이상 소유자 변동 없이 암묵적인 동의하에 도로로 사용되어 온 사실과 민원인의 요구사항이 사유지에 도로를 신설하는 것이 기존 도로의 유지 보수차원에서 행하는 절차임을 고려한다면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침해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 결 론 (의견표명)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도로 포장이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가 아니므로 공익을 위해 구에서 적극적으로 소유자의 동의를 득해 해당 도로를 포장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하고 사유지임을 들어 무조건 거부처분하는 소극적 행정행위를 개선해 나갈 것을 권고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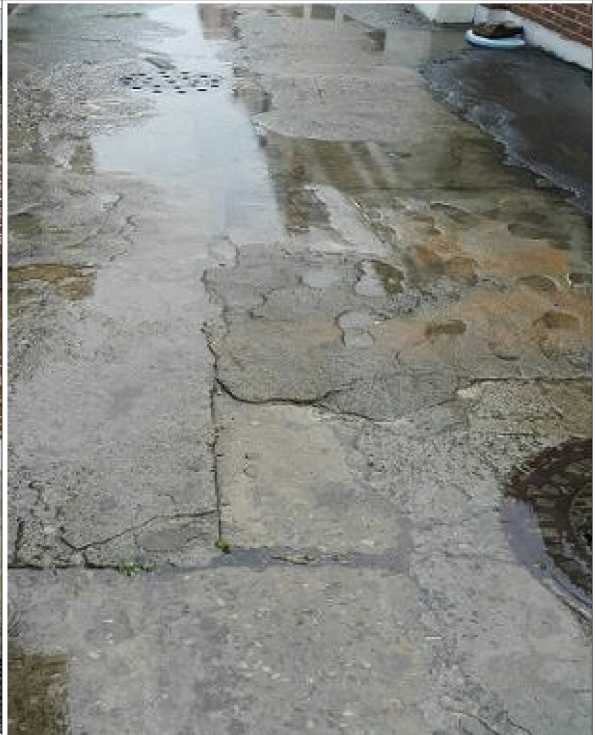
④ 해당부서 조치결과 (수용)

담당부서에서 옴부즈만의 의견을 수용하여 적극적으로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구하고 동의를 얻어지는대로 2019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해당도로를 포장하겠다는 답변을 민원인에게 통보하여 민원을 해소함.

※ 현장사진



골목 전경



도로에 빗물이 고인상태



도로 배수구 주변 훼손상태

10. 주안1구역 재개발 민원 법적 쟁점 검토 요청

① 검토사항 요지

주관 옴부즈만	주안1구역 재개발 조합 보궐선임 대의원추천방법의 적법성 여부와
김 태 응	대의원회의 및 정기총회의 유효성 판단

② 검토 내용

□ 보궐선임 대의원 31명에 대한 대의원 추천방법의 적법성여부

1. 검토 및 판단

(1) 추천의 정의

추천이라 함은 후보자 명부에 등록된 후보자를 선택하여 해당기관에 천거하는 행위로서 대의원에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충원하기 위하여 대의원이 추천 후보자 명부에 등록된 자 중에서 적당한 후보를 선택하여 천거하는 절차라 할 수 있음.

(2) 판단

민원인의 주장은 한 사람의 후보를 5명 이상 대의원이 추천하는 형식이 추천이고 여러 후보를 정해놓고 추천하는 행위는 추천이 아닌 동의의 행위라 볼 수 있어 추천의 형식에서 벗어났다는 취지로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가. 추천의 정의에 비추어 후보자 명부에 서명 날인한 것은 후보자 명부에 있는 사람 전부를 추천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나. 정관에 5명 이상의 대의원이 추천하되 중복추천이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음으로 한 사람이 여러 명을 추천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해석되는바 추천의 방식에 흠이 있다고 볼 수 없어 대의원 선임에 절차 상 하자는 없다고 판단됨. 다만, 추천에 대한 방법, 절차에 대하여 법 규정이나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 또는 증명된 이론의 정립이 없는바 사회 통념 상 통용되는 개념이나 강학 상 학설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러한 판단은 법을 집행하는 관리감독관청이 아닌 법원에서 판단하여야 하는 사항이라 판단 됨.

2. 옴부즈만 의견

대의원 8명(5명 이상)이 대의원 후보 명단에 있는 자를 모두 선택하여 추천한 후보를 임시총회

결의를 거쳐 대의원으로 선임한 절차의 하자는 서류상으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다만, 법에 명문 규정 등이 없는 추천 방법의 적법 여부의 판단은 행정심판 및 법원의 판단을 통하여 적법여부를 가려야 할 것임.

□ 대의원 보궐선임이 무효하다면 이후 대의원회의 및 정기총회가 유효한지 여부

1. 검토 및 판단

(1) 대의원회의의 구성 적법 여부

언급한대로 대의원회 구성은 적법하나 특정 인원의 대의원이 무자격자이거나 31명의 보궐 선임된 대의원의 선임이 무효라는 이유로 법정 대의원 수에 미달하게 된 경우 해당 대의원회의의 구성은 무효가 됨.

(2) 대의원회의의 의결 무효 여부

위와 같이 대의원회 구성이 무효가 되는 경우에는 대의원회의의 의결 역시 무효임.

(3) 정기총회 의결 무효 여부

대의원회의는 총회의 권한을 일부 대행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 대의원회 의결 사항 전권은 정기총회 역시 직접 수행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

따라서, 대의원회의의 의결이 무효라 할지라도 요건을 충족한 정기총회의 의결 사항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됨.

2. 옴부즈만 의견

요건 불충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법정 대의원 수를 충족하지 못한 대의원회의의 구성은 무효이며 이렇게 구성된 대의원회의의 의결 역시 무효에 해당함. 하지만 정기총회의 의결 사항은 대의원회의의 구성과는 별도로 정기총회의 의결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그 의결 사항은 유효할 것으로 판단됨.

11. 영업장 무단확정 시정명령 사전통지에 대한 불복 민원

① 민원요지

주관 옴부즈만	영업장 무단확정 시정명령 사전 통지에 대해 형평의 원칙에 위배
김 태 응	된다고 주장하며 민원제기

② 조사내용

□ 민원접수 및 진행상황

가. 2018. 11. 14. : 옴부즈만 실 민원접수

나. 2018. 11. 21. : 법령검토

다. 2018. 11. 28. : 민원철회

□ 신청 취지

민원인은 식품위생법 제37조에서 영업장 확장 시 요구하는 신고의무를 이행함이 없이 영업장을 무단 확장하여 영업하다 적발되어 미추홀구청 위생과로부터 시정명령처분 사전통지문 수령하였고 이에 대해 불복하며 민원을 제기함.

□ 신청인의 주요 주장내용

가. 민원인은 현재 주안 남부종합시장 내 ‘정통신포닭강정’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업 영업허가를 받아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나. 음식점업 허가 당시 시장 아케이드 내 임시가판대 설치 장소는 영업장 면적으로 신고하지 않았으며 임시가판대 설치 장소에 닭을 조리하고 상품을 진열 포장하여 판매할 수 있는 가판대를 설치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다. 해당 조리 가판대를 설치함에 있어 소방안전 및 도시가스 설치와 관련한 신고를 하였으며 정기적으로 소방안전점검을 받고 있음.

라. 아케이드 내 소방차 및 보행자 전용 도로를 침범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전국 모든 시장은 임시 가판대를 설치하여 상품을 진열 판매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실질적인

제제는 없는 상황에서 민원인에게만 시정명령을 내리는 것은 명백한 형평의 원칙 위배라고 주장함.

□ 사실관계

- 가. 2018.10.18 15:20 경 식품 위생법 제37조 규정에 따른 신고 없이 영업장 면적을 무단확장하고 영업하다 적발됨.
- 나. 2018.10.30 해당 위반 사실과 관련하여 미추홀구청 위생과로부터 시정명령 처분 사전통지문 수령
- 다. 2018.11.14 민원인의 의견제출 및 옴부즈만 실 민원 접수

③ 조사결과

□ 현장 실태

- 가. 시장 내 거의 모든 사업자들은 아케이드 내 임시 가판대 설치 장소에 상품을 진열하고 판매 및 적치하는 장소로 활용하고 있었음.
- 나. 민원인 역시 닭강정 조리시설과 상품 진열 및 판매 가판대를 임시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으며 이에 대한 소방안전 점검은 주기적으로 시행되고 있음.

□ 판 단

- 가. 전통시장 내 가판대와 관련하여 영업자가 영업을 위해 임시로 사용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한 관련법은 발견하지 못함.
- 나. 음식점업의 경우 식품위생법 상 영업장 면적이 필수 인허가 사항이며 이에 대한 변경은 중요한 변경 사항에 해당하여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함.
- 다. 그러나 민원인의 사업은 음식점업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해당 임시 가판대의 사용 성격 상 해당 사업을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2호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 15에 의하여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으로 해석할 수 있음.
- 라.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의 경우 식품위생법 제37조에 의하여 신고하는 업종에 해당하며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 제6항에 따라 사업장 면적은 중요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함.
- 마. 일반적인 신고 업종은 중요한 사항에 사업장의 면적이 포함되나 즉석판매 제조 가공업의 경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6조 제6호에 의하여 사업장 면적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함.
- 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6조 제6호에 의하여 식품의 유형을 달리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중요한 변경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신고 의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결 론 (의견표명)

- 가. 담당 부서에서 해당 민원을 접수하고 해결함에 있어 ‘모든 시장 내 사업장이 임시가판대를 현실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민원이 접수되었다는 이유로 해당 민원인에게만 식품위생법의 잣대로 시정명령을 사전 통지하였 다는 것은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결정이라 할 수 있음.
- 나. 또한 평소 시장 내 시설물에 대한 관리감독을 해야 할 담당 부서가 신고접수된 민원만을 대상으로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에 항의하는 민원인을 상대로 ‘신고하면 동일한 행정처분을 하겠다’라고 하는 식의 답변 및 태도를 보이는 것은 자칫 민원의 확대를 야기 할 소지가 있는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라 할 수 있음.
- 다. 따라서 상기 판단과 같이 합법적 대체방안이 강구될 수 있다면 이에 대한 세심한 검토를 통해 이를 해결방안으로 민원인들에게 제시하여야 할 것이며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조례 제정 등 구 차원의 활성화 방안을 전통 시장 종사자의 입장에서 연구 발굴하여야 할 것임.

④ 해당부서 조치결과 (조건부수용)

민원인이 기한 내에 사전명령상의 내용을 이행함으로써 위법상태를 해소하여 민원 종결 처리함.

*현장사진



제 6 부

부록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옴부즈만 활동 현황 83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옴부즈만 홍보 사항 89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94

제6부 부록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옴부즈만 활동 현황

1 2017년도 옴부즈만 운영성과 보고회 개최 (2018. 2. 22)



2017 운영성과 보고회 개최



손보경 대표 옴부즈만 사례발표



김태웅 옴부즈만 사례 발표



강원구 옴부즈만 사례발표

2 전국 지방 옴부즈만 협의회 워크숍 참석 사례발표(2018.10.11.)



손보경 대표옴부즈만 사례 발표



김태웅 옴부즈만 사례 발표

3 민원현장 조사 및 대책회의



학익동 성당 민원 현장 조사



학익동 성당 민원 1차현장 회의



학익동 성당 민원 2차현장 회의



공사장 관련 민원 중재회의



세계로마트 민원 현장 회의



아파트 인근 공사장 피해 민원 현장 조사



DCRE 관련 민원회의



주안1구역 민원 대책회의

4 정례회의 개최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옴부즈만 홍보 사항

1 미추홀구 구정홍보지를 통한 옴부즈만 홍보(2018년 9월호)

“주민과 행정기관 갈등 풀어드립니다”

주민감사 옴부즈만제도 시행 2년

미추홀구가 ‘주민감사 옴부즈만제도’를 시행한 지 2년이 지났다. 옴부즈만은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정 행위나 불합리한 제도로 인해 주민들이 피해나 손해를 입었을 때 이를 구제하고 개선하기 위해 만든 시민권익 보호제도다.

현재 전문가 세 명이 행정기관과 주민 사이에 중재자로 나서 상담부터 처리에 이르는 과정에 함께 한다.

옴부즈만을 시작한 2016년엔 옴부즈만으로 직접 들어온 민원이 한 건도 없어 구에서 의뢰한 민원만 7건 처리하는 데 그쳤다. 그러던 것이 2017년에는 총 79건의 민원이 접수, 처리되었다. 까다로웠던 민원 신청 조건이 완화된 덕분이다. 그러나 아직 갈 길이 멀다. 구민 대부분이 옴부즈만에 대해 여전히 잘 알지 못한다.

지난해부터 옴부즈만 대표를 맡고 있는 손보경 씨는 “행정기관과 구민 사이에 행정상 갈등이 벌어졌을 때, 이를

구민 입장에서 바라보고 도움을 주려는 것이 옴부즈만의 기본 취지”라며 “이제 활동 초기 단계이고 아직 홍보가 부족해 구민들이 옴부즈만을 잘 모르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에 손 대표는 “하지만 옴부즈만은 민원을 해결할 뿐만 아니라 행정권의 남용을 막고 폐쇄적인 관료주의의 관행을 없애며 민주적, 정치적 대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제도”라며 “반상근인 근무형태를 좀 더 체계를 갖춰 운영해 구민 대면 서비스 시간을 늘리고, 고충민원이 들어오기를 기다리기보다 불합리한 행정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발굴해 개선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가장 필요한 것은 홍보다. 손 대표는 “구민들은 구청 사이트나 입간판의 홍보 내용에 그리 관심이 많지 않다”며 “구청 사이트와 홍보 배너를 배치하거나 구정 홍보지에



지속적인 게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구 담당자는 “올해는 옴부즈만 활동을 활성화 하는 것이 목표”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나가는 한편, 민원처리에 있어서도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함으로써 민원인의 신뢰를 얻고 이를 발판으로 자생적인 홍보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옴부즈만 사무실은 구청 본관 5층에 위치, 월~수요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운영한다. 구청 홈페이지(주민참여 → 주민감사옴부즈만 → 고충민원신고)에 글을 올리거나 전화(☎880-4585)로 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심해진 명예기자

2 홍보용 황사마스크 배포



전면

고충민원!

미추홀구 옴부즈만과 상담하세요

신청대상 미추홀구의 잘못된 행정처분으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사람 누구나

상담신청 및 문의
☎ 032-880-5978, 032-880-458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감사실

공복곶에서 행복한 미추홀구

홍보문안

3 실내외 배너 설치



본관 1청사 입구



본관2청사 정문

4 각 동 현수막 계획



5 구 홈페이지 홍보 배너

2019년 주민참여 마을혁신의 해

다가치, 함께 만드는 행복한 미추홀구

다가치, 함께 만드는 행복한 미추홀구

- 같이 잘 사는 미추홀구
- 진짜 잘 사는 미추홀구
- 다시 잘 사는 미추홀구
- 말이 통하는 미추홀구
- 더할 나위 없는 미추홀구

자세히 보기 >

미추홀구 < > ||

공지사항 고시/공고/채용 임차정보 구보 민원편람

· 2019년 인천업사이클에코센터 교육강사 모집	2019-01-29
· 롯데마트인천터미널점 구인입니다	2019-01-25
· 2019년도 미추홀구온마을학교 인터뷰심사 참석안내	2019-01-25
· 설 연휴 '화요일' 민원실운영·휴무안내	2019-01-25
· 총역 발생현황 조회 사이트 알림	2019-01-25

열린구청장실 >

구청장 24시 >

구청장 공약실천 >

현장스케치 >

평생학습관	미추홀구의회	보건소	나이스마루	미추홀구 알리미서비스	청소년	복지로	규제개혁 신문고	정보공개포털	공공데이터 포털	디지털인권 미추홀구문화대전
-------	--------	-----	-------	-------------	-----	-----	----------	--------	----------	----------------

제252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인터넷 생방송 안내

'19. 1. 22(화) ~ 1. 31(목), 10일간

저단형 현수막게시대

이/용/신/청

미추홀구청 도시관리과 ☎032-880-4471

건강보험공영체

무인민원발급서비스 실시

- 발급가능 증명서: 건강보험 국민연금납부 확인서 5종, 자격득실확인서, 자격확인서
- 이용시간: 연중무휴 24시간 가능, 단 각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시간을 따름

고충민원

구민감사옴부즈만과 상담하세요!!

- 상담신청 및 문의: 032)880-5978
- 신청대상: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행정체제로 권리·이익을 침해 받은 누구나
- 그외가사, 옴부즈만 근무시간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2015. 09. 30 조례 제1269호

전부개정 2017. 03. 06 조례 제1402호

(일부개정) 2018.05.21 조례 제1484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조례의 명칭변경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권익 보호·보호 증진과 지역사회의 발전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고충민원”이란 민원사항 중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이하 “구”라 한다)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 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구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구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2. “신청인”이란 이 조례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이라 한다)에게 고충민원을 신청한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시민단체”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행정기관에 등록된 비영리민간 단체를 말한다.
4. “소속기관 등”이란 「지방자치법」에 따른 보조기관, 소속행정기관, 하부 행정기관 및 법령 등에 따라 그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5. “옴부즈만”이란 구 및 그 소속기관 등에 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제도개선을 위하여 조례 제3조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6. “행정기관 등”이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및 법령에 따라 행정기관의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제2장 옴부즈만의 구성·직무 등

제3조(구성) ① 옴부즈만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소속하에 두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독립성을 보장한다.

② 옴부즈만은 3명 이내로 구성하고, 그 중 1명을 대표 옴부즈만으로 호선한다.

③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 및 추천에 의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토목공학, 건축공학, 회계학, 법학, 행정학 등 관련분야의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한 사람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건축사·세무사·공인회계사·기술사·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시민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제4조(임기 및 신분보장) ① 옴부즈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옴부즈만이 궐위된 때에는 새로운 옴부즈만을 위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후임으로 위촉되는 옴부즈만의 임기는 새로 시작된다.

③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1.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심신상의 장애,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4. 그 밖에 옴부즈만 직책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④ 제3항제3호, 제4호의 경우에는 당사자를 제외한 옴부즈만 전원의 찬성에 의한 의결을 거쳐 대표 옴부즈만의 제청으로 구청장이 면직 또는 해촉한다.

제5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옴부즈만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
 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
- ② 옴부즈만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된다.

제6조(검직금지) 옴부즈만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직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 의원
2. 행정기관 등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제7조(비밀유지 의무) 옴부즈만으로 있거나 있었던 사람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제8조(직무)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14조에 따라 신청된 고충민원의 조사·처리
2.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옴부즈만에게 의뢰한 사건의 조사·처리
3. 구민들의 권익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각종 활동 수행
4. 국민권익위원회 등 국내·외 기구·기관들의 교류·협력
5. 그 밖에 옴부즈만 회의의 의결을 거쳐 필요하다고 결정한 활동

제9조(직무관할) 옴부즈만이 제8조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대상기관은 다음과 같다.

1. 구 및 그 소속기관 등
2. 구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지방공기업, 출자기관, 출연기관
3. 구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

제10조(제척·기피·회피) ①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무활동에서 제척된다.

1.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당해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 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본인이 당해 사안의 신청인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본인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증언·감정·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경우
4. 옴부즈만이 되기 전에 당해 사안에 대하여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경우
5. 본인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신청인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이해당사자는 옴부즈만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해당 옴부즈만에 대해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옴부즈만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직무활동에서 스스로 회피할 수 있다.

제11조(회의) ① 옴부즈만은 직무범위를 각기 달리하여 독립하여 업무를 수행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규정권고, 제도개선 권고, 감사의뢰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종전 의결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대표 옴부즈만이 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그 밖에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상호간의 관계) 옴부즈만은 합의제로 운영하며 상호협의 또는 지원을 요청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전문가 자문) 옴부즈만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전문적·기술적 사항에 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전문가를 초빙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3장 고충민원의 조사·처리 등

제14조(고충민원의 신청) ① 누구든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옴부즈만에게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옴부즈만에게 고충민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 서면(「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신청해야 한다. 다만, 서면으로 신청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

1. 신청인의 이름과 주소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2. 신청의 취지·이유와 고충민원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 내용
3.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③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접수된 고충민원 서류를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옴부즈만이 고충민원 서류를 보류·거부 또는 반려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그 밖에 고충민원의 접수와 관련한 구체적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고충민원의 조사) ①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을 접수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7일 이내에 조사에 착수하여 6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옴부즈만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충민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고충민원의 내용이 거짓이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고충민원의 원인이 발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였을 경우.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4.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동일 민원을 제출한 경우
5. 그 밖에 고충민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 옴부즈만이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결정한 경우

③ 제15조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 조사를 착수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고충민원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제15조제2항에 따라 고충민원을 조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취지와 이유를 붙여 고충민원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④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의 조사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완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자 및 구청장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조사의 방법) ①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을 조사할 경우에는 구의 관련 부서에 그 취지를 통보한다.

② 옴부즈만은 고충민원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인 또는 관련 대상기관에 대하여 질문하고 현황을 청취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조사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옴부즈만은 접수된 고충민원을 옴부즈만이 직접 조사하기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를 관계부서 및 기관에 이첩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요구나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고 이에 협조해야 한다.

제17조(고충민원의 각하 등) ① 옴부즈만은 접수된 고충민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고충민원을 각하할 수 있다.

1. 행정심판, 행정소송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2. 법령에 따라 화해·알선·조정·중재 등 당사자 간의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3. 감사원이나 그 밖의 행정기관에서 감사가 진행 중인 사항
4. 사인 간의 권리관계 또는 사생활에 관한 사항
5. 구의회에 관한 사항
6. 검찰·경찰 또는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
7. 옴부즈만이 조사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항

② 옴부즈만이 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을 각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권리의 구제에 필요한 절차와 조치에 관하여 안내할 수 있다.

제18조(시정의 권고 및 의견의 표명) ① 옴부즈만은 접수된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처분 등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적절한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신청인의 주장이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구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제19조(제도개선의 권고 및 의견의 표명)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을 조사·처리하는 과정에서 자치법규 및 그 밖의 정책·제도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제20조(의견제출 기회 부여) ① 옴부즈만은 제18조 또는 제19조에 따라 구청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시정 또는 제도개선의 권고를 하기 전에 구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과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제9조 각 호에 따른 직무관할 대상기관의 직원,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옴부즈만이 개최하는 회의 등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21조(처리결과의 통보) 구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옴부즈만의 시정권고 등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통지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조치결과를 옴부즈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감사의 의뢰)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의 조사·처리과정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위법·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구청장에게 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23조(권고 등 이행실태의 확인·점검) 옴부즈만은 제18조 또는 제19조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의 이행실태를 확인·점검할 수 있다.

제24조(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 옴부즈만은 매년 운영상황을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4장 옴부즈만의 운영지원 등

제25조(운영지원) 구청장은 옴부즈만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인력 및 수당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수당지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2015.9.30 조례 제12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3.6 조례 제14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